

목 차

1. 대화도시계획사업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33
2.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37
3.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43
4.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47
5.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51
6. 1995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및결과·처리계획	100

— 대화 도시계획사업 결정에 따른 —

(일 단 의 주 택 지 조 성 사 업)

— 의 회 의 건 청 취 (안) —

평 창 군

도시계획사업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

(일 단 의 주 택 지 조 성 사 업)

▣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다.
 - (도지사 및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권한 위임)

▣ 주문내용

- 평창군수가 입안한 대화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하여 평창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함.

▣ 대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입안 사유

- 1979년 1월 30일자 강원도 고시 제9호로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된 대화 도시계획을 급회에 확장하면서 대화5리 양지마을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인 집단마을(문화마을)을 유치하므로 건전한 도시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민복지향상에 기여코자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결정코자함.

▣ 주요결정내용

1. 사업명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대화 문화마을 조성)
2. 위치 : 평창군 대화면 대화5리 884번지 일대
3. 면적 : 56,400㎡ (17,061평)

4. 계획개요

가. 주택용지 ————35,216㎡

- 단독주택용지 : 33,481㎡

- 근린생활용지 : 1,735㎡

나. 공공용지 ————21,184㎡

- 농기계보관소 : 432㎡

- 공동작업소 : 451㎡

- 어린이공원 : 1,540㎡

- 완충녹지 : 1,025㎡

- 주차장 : 921㎡

- 도로 및 보도 : 13,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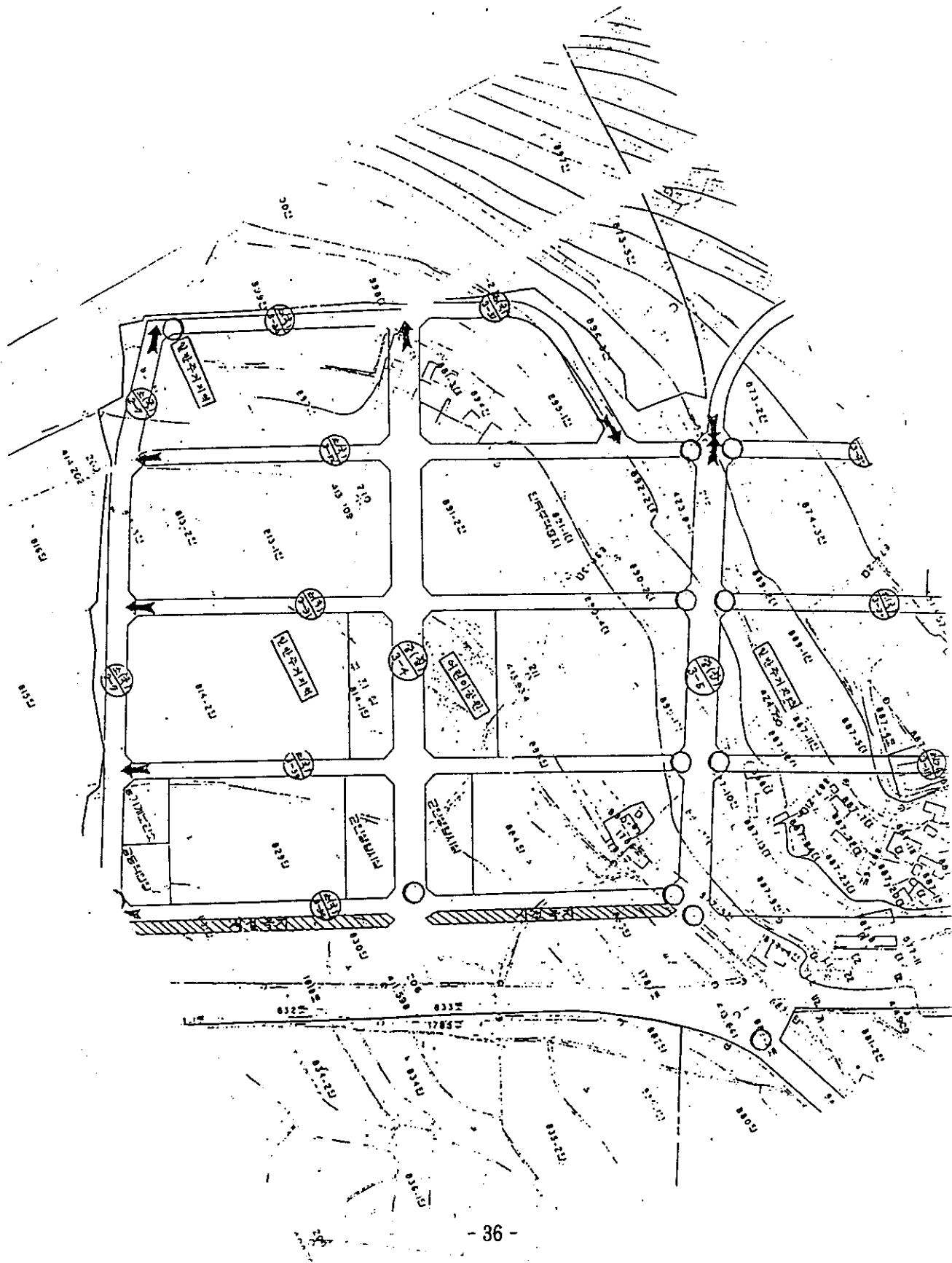
- 녹지 및 사면 : 3,643㎡

▣ 참고사항

○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 기간 : '95. 8. 19 ~ '95. 9. 4(14일간)

- 방법 : 신문공고 2회(강원일보, 도민일보)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
------	----

제출년월일 : 1995. 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제안이유

지방자치시대 민선단체장의 정책기능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6. 12. 31까지 시한부 정원(정년을 기준으로한 한시정원)으로 정책보좌관을 두기 위함.

주요골자

가. 군 본청 내무과에 4급(행정, 군수 정책보좌관) 정원 증 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217"을 "218"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에 대한 조치) 정책보좌관 정원인 4급 (지방서기관)은 개인별 한시 정원으로 그 시한은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평창군의 본청·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청 : 217 인 2. 의회사무과 : 11 인 3. 직속기관 : 99 인 4. 사업소 : 8 인 5.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240 인 	<p>제2조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청 : 218 인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00년 전통위에 세계속의 강원도”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0361)51-3320, 2224, 2295 / 담당 양창환

문서번호 지방 12200-1345
 시행일자 1995. 8. 29 (영구)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내무과장

선결	25 12 10 9/2		지시	
접	일자 시간	1995. 8. 30	결	부견의 박상배
수	번호	2014	재	차장 김대영
처리과	행정과		공	계장 김진
담당자	김강우		탐	

제목 '95 정책보좌관 운용 시행지침 및 정원승인 통보

민선단체장의 정책기능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95 정책보좌관 운용에 따른 시행지침과 정원승인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정책보좌관 운용 시행지침 1부.
- 2.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서 1부. 끝

강 원 도 지



수신처 : 더 (11. 13. 18)

'95 政策補佐官 運用 施行指針

-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민선단체장의 정책기능을 효율적으로 보좌함으로써
- 일선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함

□ 基本方針

- 군수 밑에「정책보좌관」을 두며 시한부 정원임
- 정책보좌관은 4급(행정)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 主要機能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연구 및 민원제도의 개선 연구
- WTO·GR 대책 및 관광개발등 중요한 지역정책 개발연구
-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 및 처리

□ 定員管理

- '96. 12. 31까지 시한부 정원으로써 정년을 기준으로 한 한시 정원으로 운용하되
- 정책보좌관이 명예퇴직, 공로연수요원 발령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감축조치 하여야 하며
- 반드시 정원조례 부칙에 한시정원임을 명정한후 정원관리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서

단 체 별	직 명	직 급	정 원	비 고
평 창 군	지방서기관	4급(행정)	1명	
철 원 군	지방서기관	4급(행정)	1명	
양 양 군	지방서기관	4급(행정)	1명	
합 계			3명	

※ 정원시행일 : 1995년 8월 24일

- ① 본 승인 정원은 본청 정원임
- ② 정원은 정년을 기한으로 한 개인별 한시정원으로 '9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정원임

- 이 하 여 백 -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
----------	----

제출년월일: 1995. 10.

제 출 자: 평 창 군 수

제안이유

조례·규칙의 적법·타당성 확보 및 제정 절차의 신뢰성·합리성 보장을 위하여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인 조례·규칙 심의회를 군정조정위원회와 별도로 구성 운영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조례·규칙사항을 제외함(안 제3조제4호)

참고사항

내무부령 제659호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별첨)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를 "중요한 훈령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결정사항)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사항 을 결정한다.</p> <p>1. ~ 3.(생략)</p> <p>4. <u>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u> 에 관한사항</p> <p>5. ~ 25.(생략)</p>	<p>제5조(수당)</p> <p>.</p> <p>1. ~ 3.(현행과 같음)</p> <p>4. <u>중요한 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u> 사항</p> <p>5. ~ 25.(현행과 같음)</p>

부 령

○내무부령 제659호

조례·규칙심의회의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5년 9월 4일

내무부장관 권

조례·규칙심의회의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안 기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 (의장의 임무) ①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순에 따른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다음 각호의 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1. 특별시의 경우에는 공보관·기획담당관
2.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공보관·기획관
3. 시·국이 설치된 시·자치구의 경우에는 문화공보담당관·기획담당관
4. 군 및 시·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경우에는 공보계장·법무계장

②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중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회의소집) ①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의안제출) ①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정보의견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기획관실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인이상의 시·국·과의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제실·국·과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대리출석) ①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시·국·과의 직급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 (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시·국·과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관(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법무계장)이 된다.

제11조 (회의록) ①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법무담당관(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법무계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
----------	----

제출년월일: 1995. 10. .

제 출 자: 평 창 군 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조례의 일부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조례·규칙의 공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공보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조례·규칙의 공포일은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날 또는 게시된날로 하던것을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함.(안 제8조)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별첨)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중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을 "공보가 발행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공포방법)조례·규칙등은 <u>군보나 실</u> <u>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공고 또</u> <u>는 고시 하여야 한다.</u></p>	<p>제7조(공포방법)조례·규칙등은 <u>공보에 게</u> <u>재 하여야 한다.</u></p>
<p>제8조(공포일 등)①조례·규칙등의 공포 또 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u>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u> <u>로한다.</u></p> <p>②(생략)</p>	<p>제8조(공포일 등)①조례·규칙등의 공포 또 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u>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u></p> <p>②(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의 게재로서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한다.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
----------	----

제출년월일 : 1995. 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이 많아 이를 조정하고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등을 형평성 있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차요금의 경감(안 제3조)

- 주차장 이용차량이 2시간 초과주차시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가산.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경감.
- 임의 주차의 경우 : 주차요금의 4배.
- 주차요금과 가산금 체납자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나.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해야 할 금액조정(안 제6조)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시 현행 도로점용료 또는 군재산 대부료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 주차장 면적에 개별지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5/100를 도로점용료로 납부할 경우
 - 개별지가가 높아 도로점용료를 과다 납부하므로 인건비 계상도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게 되어 유료주차장 위탁관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도로점용료 또는 균재산 대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가액에 아래의 요율로 누진적용 징수토록하여 위탁관리 단체(자)의 후생복지대책 및 불법주정차 금지로 인한 교통질서 확립에 일익토록 하고져 함.

- 주차면수 100면 이하 _____ 50% 적용
- 주차면수 101면~150면 이하 _____ 60% 적용
- 주차면수 151면~200면 이하 _____ 70% 적용

다.1일주차권과 월정기주차권 폐지(별표 1)

○ 소형차 1일주차 30분단위 환산시 : 현행250원 × 24매(12시간) = 6,000원.

○ 소형차 1일주차권 구입시 : 현행 3,000원.

○ 소형차 월 정기주차권 구입시 : 현행 월56,000원 ÷ 30일 = 1일 1,866원.

※ 위와 같이 30분단위로 주차하는 차량의 주차료 부담이 1일주차료와 정기주차료보다 가중되므로 주차료간의 형평성 결여.

라.주차요금 인상(별표 1)

○ 1급지 소형(승용)차량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 2급지 소형(승용)차량 8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

마.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정(안 제13조)

바.주차장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장전용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 제한(안 제14조)

사.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안 제15조)

아.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예의 제공(안 제15조의 2)

자.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안 제16조)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이용차량이 2시간 초과 주차시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를 가산
2.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

③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제2항중 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 제1호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 의 계 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군재산 대부료를 산정하여 아래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 쟁 계 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 주차면수별 요율표

- 주차면수 100면 이하 _____ 50%
- 주차면수 101~150면 이하 _____ 60%
- 주차면수 151~200면 이하 _____ 70%
- 주차면수 201면이상 1면초과시마다 — 1%추가 징수하되 100%초과 징수하지 않는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수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을 환불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영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 안에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의 완화) 영 제2조 제2항의 주차장 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80이하

2. 용적율 : 1300%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60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경우 가장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폭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법 제19조제4항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 2(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①법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 내의 공지로서 주차대수규모가 5대 이상이어야 한다.

②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 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①법 제1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차시설 배치도(축척 600분의 1 이상일 것)

2. 반경 100미터 이내의 유·출입 동선처리도면(축척 600분의 1 이상일 것)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 4(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①제1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후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중지·폐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①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별표1의 주차요금징수 기준에 의한 1일 2시간 징수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 내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1], [별표5],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차 종 별	1회주차권	비 고
		1구획당30분기준	
1급지	승용자동차이외자동차	600	
	승 용 자 동 차	300	
2급지	승용자동차이외자동차	300	
	승 용 자 동 차	100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가. 4월 ~ 10월 : 08:00 ~ 20:00
 - 나. 11월 ~ 3월 : 09:00 ~ 19:30
3. 급지구분
 - 가. 1급지 : 읍·면소재지
 - 나. 2급지 : 1급지 이외지역

[별표5]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3조 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규모(연면적)
숙박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휴양콘도 미니업	2객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상정대수+기타 부대시설면적 4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0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667㎡미만인 시설물
의료시설	종합병원	3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 타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0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667㎡미만인 시설물
운동시설	골 프 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육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기 타	상업지역 : 시설면적 200㎡ 당 1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267 ㎡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333㎡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0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667㎡미만인 시설물
관 략 집회시설	운동경기 관람장	수용인원 200인당 1대	
	예 식 장	시설면적 80㎡당 1대	면적 80㎡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33㎡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200㎡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33㎡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667㎡미만인 시설물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규모(연면적)
운수시설	공항시설, 버스 터미널, 철도역	시설면적 200㎡당 1대	면적 200㎡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 시설면적 200㎡당 1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267㎡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333㎡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0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667㎡미만인 시설물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107㎡당 1대	면적 107㎡미만인 시설물
	기 타	시설면적 133㎡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33㎡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667㎡미만인 시설물
위락시설	유흥음식점	시설면적 107㎡당 1대	면적 107㎡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33㎡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33㎡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667㎡미만인 시설물
업 무 시 설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33㎡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33㎡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667㎡미만인 시설물
종교시설, 전시시설, 통신촬영시설, 창고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0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667㎡미만인 시설물
근 린 생 활 시 설		시설면적 267㎡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67㎡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667㎡미만인 시설물
단 독 주 택		건축면적 400㎡이하의 1대, 건축면적 4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400㎡를 초과하는 267㎡당 1대를 더한 대수	면적 267㎡미만인 건축물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규모(연면적)
공 동 주 택	건축면적 200㎡당 1대	면적 200㎡미만인 건축물
기 타 건 축 물	시설면적 400㎡당 1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667㎡미만인 시 설물 기타지역의 경우는 면적 1,333㎡미만인 시설물

[비고]

1. 시설물의 면적은 연면적으로 말하고, 하나의 부지안에 2개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되,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연면적은 이를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용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로 산정한 설치기준 대수를 합한 대수를 당해 시설물의 설치기준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설물의 전체면적(증축분을 포함한다)에 설치대상제외시설물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대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설주차장의 대수를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개수중 소숫점이하의 단수는 이를 1대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대수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카태일바, 다실,연회실,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공동주택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판매시설,창고시설,운수시설 및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5%이상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화물의 하역 기타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에는 당해 시설의 부설주차장대수의 1%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되, 대수산정에 관하여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6]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3조 제2항 관련)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규모(연면적)
숙박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휴양콘도 미니엄	2객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상정대수+기타 부대시설면적 4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9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90 ㎡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 ㎡미만인 시설물
의료시설	종합병원	3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 타	시설면적 9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90 ㎡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 ㎡미만인 시설물
운동시설	골 프 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육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기 타	상업지역 : 시설면적 90㎡당 1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20 ㎡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50㎡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90 ㎡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 ㎡미만인 시설물
관 략 집회시설	운동경기 관람장	수용인원 90인당 1대	
	예 식 장	시설면적 36㎡당 1대	면적 36㎡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6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9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60 ㎡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 ㎡미만인 시설물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규모(연면적)
운수시설	공항시설, 버스 터미널, 철도역	시설면적 90㎡당 1대	면적 90㎡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 시설면적 90㎡당 1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2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9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미만인 시설물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48㎡당 1대	면적 48㎡미만인 시설물
	기 타	시설면적 6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6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미만인 시설물
위락시설	유형음식점	시설면적 48㎡당 1대	면적 48㎡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6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9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6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미만인 시설물
업 무 시 설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6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9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6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미만인 시설물
종교시설, 전시시설, 통신촬영시설, 창고시설		시설면적 9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9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미만인 시설물
근 린 생 활 시 설		시설면적 12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2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미만인 시설물
단 독 주 택		건축면적 180㎡이하의 1대, 건축면적 18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8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	면적 120㎡미만인 건축물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규모(연면적)
공 동 주 택	건축면적 90㎡당 1대	면적 90㎡미만인 건축물
기 타 건 축 물	시설면적 180㎡당 1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미만인 시 설물 기타지역의 경우는 면적 600㎡미만인 시설물

[비고]

1. 시설물의 면적은 연면적으로 말하고, 하나의 부지안에 2개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되,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연면적은 이를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용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로 산정한 설치기준 대수를 합한 대수를 당해 시설물의 설치기준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설물의 전체면적(증축분을 포함한다)에 설치대상제외시설물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대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설주차장의 대수를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개수중 소숫점이하의 단수는 이를 1대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대수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카테일바. 다실,연회실.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공동주택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판매시설,창고시설,운수시설 및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5%이상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화물의 하역 기타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에는 당해 시설의 부설주차장대수의 1%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되, 대수산정에 관하여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앞 면)

(15조의 3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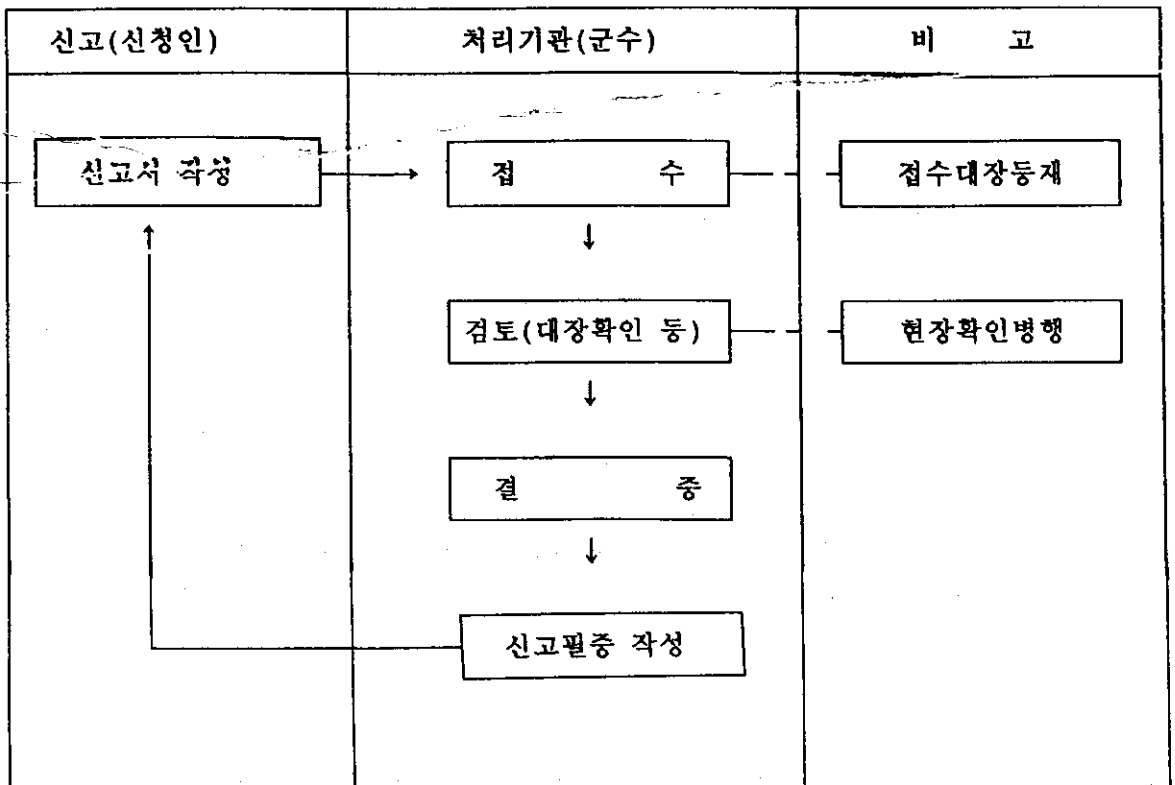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 현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부 설 주 차 장	⑤명 칭		⑥주차장의형태	
	⑦위 치		⑧규 모	대 m'
	⑨이용예정일		⑩	
주차장법 제19조의 3 제1항 및 평창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1. 주차시설 배치도 2. 반경 100미터 이내의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 할 수 있는 평면도(축척 1천 200분의 1이상일 것) 3. 토지 및 건축물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조서 4.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 평 창 군 수 귀 하				
신고 계 호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필증 주차장법 제19조의 3 제1항 및 평창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뒷 면)

※ 기재상 유의사항

1. ①란은 건축주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②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한다.
3. ⑤란은 주차장의 명칭이 없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명칭 등 여타주차장과 구분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한다.
5.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15조의 4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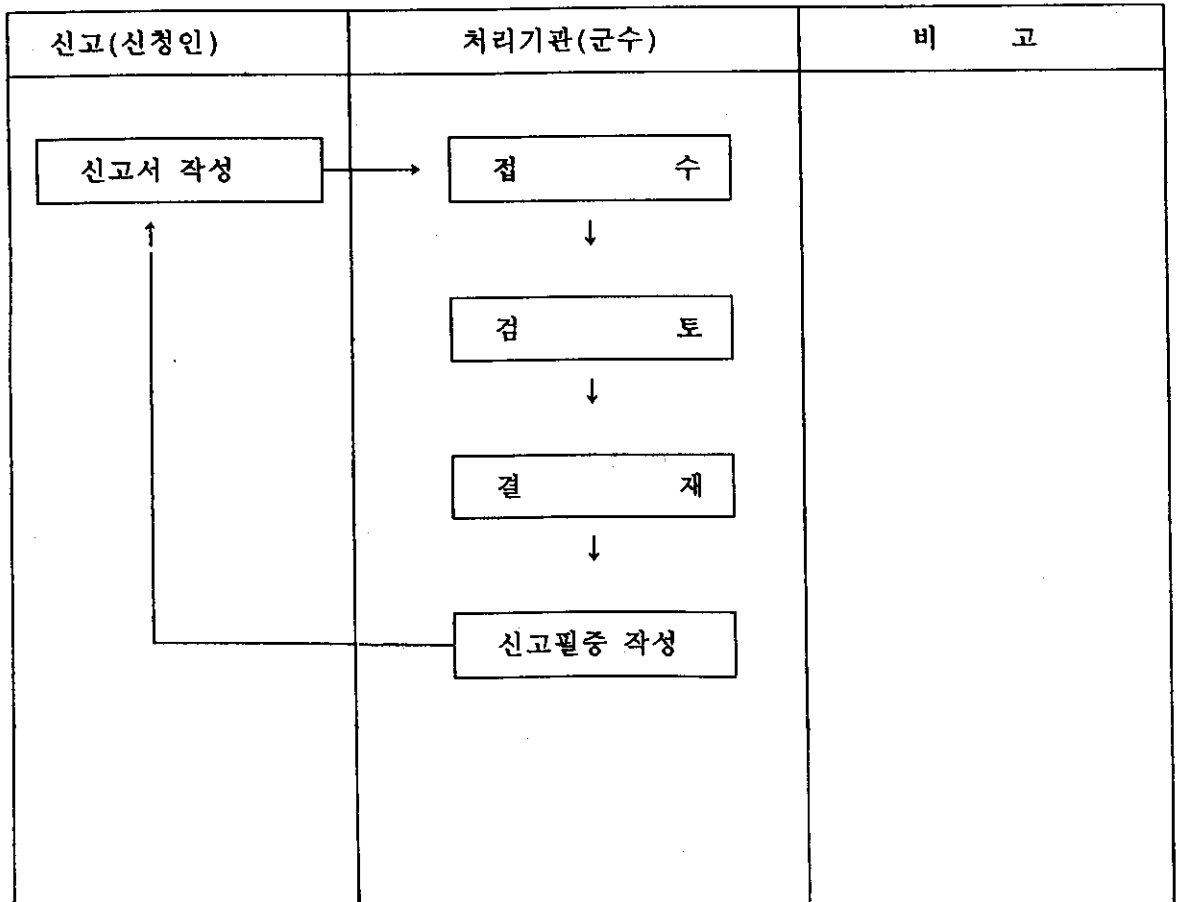
부설주차장일반이용 <input type="checkbox"/> 중지 <input type="checkbox"/>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부설주차장	⑤명칭			⑥주차장의형태	
	⑦위치			⑧규모	대 m ²
	⑨일반이용 신고번호	계	호	⑩ <input type="checkbox"/> 일반이용승인일 <input type="checkbox"/> 일반이용폐지일	. . .
⑪ <input type="checkbox"/> 일반이용중지시설규모 <input type="checkbox"/> 일반이용폐지시설규모		대	대	⑫ <input type="checkbox"/> 일반이용중지기간 <input type="checkbox"/> 일반이용폐지일	. . .
⑬일반이용중지 또는 폐지사유					
평창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일반이용중지 또는 폐지부분을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이상의 도면 (주차장의 전부를 일반이용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수수료	없 음
신고 계 호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input type="checkbox"/> 중지 <input type="checkbox"/> 폐지 신고필증 평창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뒷면)

※ 기재상 유의사항

1.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한다.
5.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제 16조 관련)

고지 번호	건 축 물 현 황				비용납부의무자			납부 금액	납부 일	무상 사용 기간	지정 주차 장
	위 치	건 축 연면적	의 무 면 대 계 수	허 가 년월일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②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②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이용차량이 2시간 초과 주차시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를 가산 2.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②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이용차량이 2시간 초과 주차시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를 가산 2.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 	<p>③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p>③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p> <p>④ < 신설 ></p>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②(생략)</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②(현행과 같음)</p>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재산대부료를 산정하여 아래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신설 ></p> <hr/> <p>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②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 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p> <p>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p> <p>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p> <hr/> <p>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 여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hr/> <p>제11조(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①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하"신고</p>	<p>※ 주차면수별 요금표</p> <hr/>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80%;">- 주차면수 100면 이하</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50%</td> </tr> <tr> <td>- 주차면수 101~150면 이하</td> <td style="text-align: right;">60%</td> </tr> <tr> <td>- 주차면수 151~200면 이하</td> <td style="text-align: right;">70%</td> </tr> <tr> <td>- 주차면수 201면이상 1면초과시마다</td> <td style="text-align: right;">1%추가 징수하되 100% 초과 징수하지 않는다.</td> </tr> </table> <hr/> <p>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②</p> <hr/> <p>,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 금을 환불한다.</p> <p>1. <삭제></p> <p>2. <삭제></p> <hr/> <p>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②</p> <hr/> <p>시행규칙 제3조의</p> <hr/> <p>제11조 < 삭제 ></p>	- 주차면수 100면 이하	50%	- 주차면수 101~150면 이하	60%	- 주차면수 151~200면 이하	70%	- 주차면수 201면이상 1면초과시마다	1%추가 징수하되 100% 초과 징수하지 않는다.
- 주차면수 100면 이하	50%								
- 주차면수 101~150면 이하	60%								
- 주차면수 151~200면 이하	70%								
- 주차면수 201면이상 1면초과시마다	1%추가 징수하되 100% 초과 징수하지 않는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노외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주차대수 40대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일 것</p> <p>2. 대상토지는 지목여하를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을것 (다만, 녹지지역내에서는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경우에만 함)</p> <p>3. 영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 기준에 적합할 것</p> <p>②법 제1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는 영 제3조제4항에 규정한 노외주차장설치 신고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개발 구역안의 주차장설치)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사업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그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며 건축물 부설주차</p>			
				<p>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p> <p>②영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 안에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6과 같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장의 설치기준에 따로 확보하여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단수가 1대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다.</p> <p>제14조(상업지역의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영 제6조제1항1호 및 제2호에 정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은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별표 6에서 정한 연면적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의 완화) 영 제2조 제2항의 주차장 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폐율 : 100분의 80이하 2. 용적율 : 1300%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60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경우 가장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p>가) 대지가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나) 대지가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폭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p>
제15조(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법 제19조제4항의 부지인근의 범위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②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등을 고려하여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동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될 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u></p>		<p>제15조의 2(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①법 제19조의 3 제2</p>		
		<p>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p>		
		<p>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p>		
		<p>지안에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 내의 공지로서 주차대수규모가 5대</p>		
		<p>이상이어야 한다.</p>		
		<p>②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p>		
<p>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p>				
<p>정한다.</p>				
		<p>제15조의 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①법 제19조의 3 제1항의</p>		
		<p>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p>		
		<p>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p>		
		<p>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p>		
<p>한다.</p>				
<p>1. 주차시설 배치도(축척 600분의 1 이상일 것)</p>				
<p>2. 반경 100미터 이내의 유·출입 동선처리도면(축척 600분의 1</p>				
<p>이상일 것)</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5조의 4(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①제1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후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중지·폐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②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16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①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②영 제6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금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p>	<p>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별표1의 주차요금징수 기준에 의한 1일 2시간 징수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p> <p>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③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p>
<p>제17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①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조업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기준 주차대수 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조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시까지 군수가</p>	<p>제17조< 삭제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지정한다.</p> <p>②제1항의 경우 다음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 동선</p> <p>2. 전체주차장 평면도 및 주차동선</p> <p>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배치계획등)</p>			
	<p>제18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①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업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제18조< 삭제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 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해 옥상주차 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 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9조(과징금 처분)①영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제19조(과징금 처분)①법 제 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0조(과태료 처분)①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징 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제20조<삭제></p>		

신 · 구조문대비표

- 81 -

현	행																																																		
<p>[별표 1]</p> <p align="center"><u>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u></p> <p align="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차 종 별</th> <th>1회주차권</th> <th rowspan="2">1 일 주차권</th> <th colspan="2">월 정 기 주 차 권</th> </tr> <tr> <th>1구획당 30 분단위마다</th> <th>주 간</th> <th>야 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급지</td> <td>보통차량</td> <td>500</td> <td>6,000</td> <td>75,000 (112,500)</td> <td>56,000</td> </tr> <tr> <td>소형차량</td> <td>250</td> <td>3,000</td> <td>56,000 (84,000)</td> <td>42,000</td> </tr> <tr> <td rowspan="2">2급지</td> <td>보통차량</td> <td>200</td> <td>2,400</td> <td>30,000</td> <td>22,000</td> </tr> <tr> <td>소형차량</td> <td>80</td> <td>1,100</td> <td>20,000</td> <td>15,000</td> </tr> </tbody> </table> <p>※ ()는 노상주차장 정기권(제3조제1항 관련)</p> <p>1. (생략)</p> <p>2. (생략)</p>	구 분	차 종 별	1회주차권	1 일 주차권	월 정 기 주 차 권		1구획당 30 분단위마다	주 간	야 간	1급지	보통차량	500	6,000	75,000 (112,500)	56,000	소형차량	250	3,000	56,000 (84,000)	42,000	2급지	보통차량	200	2,400	30,000	22,000	소형차량	80	1,100	20,000	15,000	<p>[별표 1]</p> <p align="center"><u>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u></p> <p align="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차 종 별</th> <th>1회주차권</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1구획당30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급지</td> <td>승용자동차이외자동차</td> <td>600</td> <td></td> </tr> <tr> <td>승 용 자 동 차</td> <td>300</td> <td></td> </tr> <tr> <td rowspan="2">2급지</td> <td>승용자동차이외자동차</td> <td>300</td> <td></td> </tr> <tr> <td>승 용 자 동 차</td> <td>100</td> <td></td> </tr> </tbody> </table>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구 분	차 종 별	1회주차권	비 고	1구획당30분기준	1급지	승용자동차이외자동차	600		승 용 자 동 차	300		2급지	승용자동차이외자동차	300		승 용 자 동 차	100	
구 분			차 종 별		1회주차권	1 일 주차권	월 정 기 주 차 권																																												
	1구획당 30 분단위마다	주 간		야 간																																															
1급지	보통차량	500	6,000	75,000 (112,500)	56,000																																														
	소형차량	250	3,000	56,000 (84,000)	42,000																																														
2급지	보통차량	200	2,400	30,000	22,000																																														
	소형차량	80	1,100	20,000	15,000																																														
구 분	차 종 별	1회주차권	비 고																																																
		1구획당30분기준																																																	
1급지	승용자동차이외자동차	600																																																	
	승 용 자 동 차	300																																																	
2급지	승용자동차이외자동차	300																																																	
	승 용 자 동 차	1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평창군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도심, 부도심, 지하철 연계 주차장등)</p> <p>4. 주차요금은 평창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중 또는 체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p> <p>5.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p>			<p>3. 급지구분</p> <p>가. 1급지 : 읍·면소재지</p> <p>나. 2급지 : 1급지 이외지역</p> <p>4. < 삭제 ></p> <p>5. < 삭제 ></p>

<<현행>>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5]

건축물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

구 분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지구
영 제6조 제1항 제1호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호텔, 자동차여행자호텔, 관광호텔, 업무시설)	주차장 설치의무 연면적 125제곱미터 마다 1대 비율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함)
영 제6조 제1항 제2호 (숙박시설(제1호제외), 종합병원, 전시시설, 공항시설, 공동주택, 창고시설, 종교시설)	주차장 설치의무 연면적 150제곱미터 마다 1대 비율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함)
영 제6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2호 이외의 용도)	주차장 설치의무 연면적 300제곱미터 마다 1대 비율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함)
영 제6조 제1항 제4호 (상업지역외 지역)	주차장 설치의무 연면적 300제곱미터 마다 1대 비율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함)
영 제6조 제1항 제5호 (주거, 준주거, 준공지역에서의 제1호, 제2호의 용도)	주차장 설치의무 연면적 300제곱미터 마다 1대 비율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함)

※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제2항 규정

신 · 구조문 대비표

[별표5]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규모(연면적)
숙박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휴양콘도 미니엄	2객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상정대수+기타 부대시설면적 4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00 ㎡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667 ㎡미만인 시설물
의료시설	종합병원	3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 타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00 ㎡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667 ㎡미만인 시설물
운동시설	골 프 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기 타	상업지역 : 시설면적 200㎡ 당 1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267 ㎡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333㎡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00 ㎡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667 ㎡미만인 시설물
관 략 집회시설	운동경기 관람장	수용인원 200인당 1대	
	예 식 장	시설면적 80㎡당 1대	면적 80㎡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33㎡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200㎡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33 ㎡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667 ㎡미만인 시설물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규모(연면적)
운수시설	공항시설, 버스 터미널, 철도역	시설면적 200㎡당 1대	면적 200㎡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 시설면적 200㎡당 1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267㎡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333㎡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0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667㎡미만인 시설물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107㎡당 1대	면적 107㎡미만인 시설물
	기 타	시설면적 133㎡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33㎡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667㎡미만인 시설물
위락시설	유흥음식점	시설면적 107㎡당 1대	면적 107㎡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33㎡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33㎡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667㎡미만인 시설물
업 무 시 설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33㎡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33㎡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667㎡미만인 시설물
종교시설, 전시시설, 통신촬영시설, 창고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0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667㎡미만인 시설물
근 린 생 활 시 설		시설면적 267㎡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67㎡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667㎡미만인 시설물
단 독 주 택		건축면적 400㎡이하의 1대, 건축면적 4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400㎡를 초과하는 267㎡당 1대를 더한 대수	면적 267㎡미만인 건축물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규모(연면적)
공 동 주 택	건축면적 200㎡당 1대	면적 200㎡미만인 건축물
기 타 건 축 물	시설면적 400㎡당 1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667㎡미만인 시 설물 기타지역의 경우는 면적 1,333㎡미만인 시설물

[비고]

1. 시설물의 면적은 연면적으로 말하고, 하나의 부지에 2개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되,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연면적은 이를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용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로 산정한 설치기준 대수를 합한 대수를 당해 시설물의 설치기준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설물의 전체면적(증축분을 포함한다)에 설치대상제외시설물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대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설주차장의 대수를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개수중 소숫점이하의 단수는 이를 1대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대수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카테일바, 다실,연회실,휴게실 및 위탁시설을 말한다.
9. 공동주택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판매시설,창고시설,운수시설 및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5%이상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화물의 하역 기타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에는 당해 시설의 부설주차장대수의 1%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되, 대수산정에 관하여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표6]

건축물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

구 분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지구
제6조 제1항 제1호 람집회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 설), (호텔, 자동차여행자호텔, 관광 텔, 업무시설)	주차장 설치의무 연면적 275제곱미터 마다 1대 비율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 합)
제6조 제1항 제2호 박시설(제1호제외), 종합병원, 전시시설 향시설, 공동주택, 창고시설, 종교시설	주차장 설치의무 연면적 300제곱미터 마다 1대 비율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 합)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5호 규정

신 · 구조문 대비표

[별표6]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규모(연면적)
숙박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휴양콘도 미니엄	2객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상정대수+기타 부대시설면적 4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9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90 ㎡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 ㎡미만인 시설물
의료시설	종합병원	3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 타	시설면적 9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90 ㎡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 ㎡미만인 시설물
운동시설	골 프 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육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기 타	상업지역 : 시설면적 90㎡당 1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20 ㎡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50㎡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90 ㎡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 ㎡미만인 시설물
관 략 집회시설	운동경기 관람장	수용인원 90인당 1대	
	예 식 장	시설면적 36㎡당 1대	면적 36㎡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6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9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60 ㎡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 ㎡미만인 시설물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규모(연면적)
운수시설	공항시설, 버스 터미널, 철도역	시설면적 90㎡당 1대	면적 90㎡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 시설면적 90㎡당 1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2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9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 시설물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48㎡당 1대	면적 48㎡미만인 시설물
	기 타	시설면적 6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6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 시설물
위락시설	유흥음식점	시설면적 48㎡당 1대	면적 48㎡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6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9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6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 시설물
업 무 시 설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6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9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6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 시설물
종교시설, 전시시설, 통신촬영시설, 창고시설		시설면적 9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9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 시설물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2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 시설물
단독주택		건축면적 180㎡이하는 1대, 건축면적 18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8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	면적 120㎡미만인 건축물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규모(연면적)
공 동 주 택	건축면적 90㎡당 1대	면적 90㎡미만인 건축물
기 타 건 축 물	시설면적 180㎡당 1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미만인 시 설물 기타지역의 경우는 면적 600㎡미만인 시설물

[비고]

1. 시설물의 면적은 연면적으로 말하고, 하나의 부지안에 2개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되,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연면적은 이를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용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로 산정한 설치기준 대수를 합한 대수를 당해 시설물의 설치기준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설물의 전체면적(증축분을 포함한다)에 설치대상제외시설물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대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설주차장의 대수를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개수중 소수점이하의 단수는 이를 1대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수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대수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카테일바. 다실,연회실.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공동주택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판매시설,창고시설,운수시설 및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5%이상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화물의 하역 기타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에는 당해 시설의 부설주차장대수의 1%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되, 대수산정에 관하여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설비지구)②주차장설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폐지)①노상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①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2(노상주차장에서 의 주차행위 제한) 누구든지 노상주차장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3.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4.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옹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공용제한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공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노상주차장의 주차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노외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주차장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 정비계획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를 완료한 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그 설치 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받기전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①노외주차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6조(중지등의 신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용을 중지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②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보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8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표시)①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상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②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2조제5항,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 제1항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시장·군수"로 본다.

제25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의 적용)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2. 제12조제5항(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3. 제12조제2항(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중지 또는 금지한 자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3. 제18조제1항(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주차장법시행령

제2조(주차장정비지구)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율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할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할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

배. 다만, 비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도로의 폭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미만의 도시의 경우에는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③주차장정비지구·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다.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8대의 규모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로 한다

③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등 (이하 "시설물설치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대수
2. 부설주차장의 각 시설물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3. 부설주차장의 형태
4. 부설주차장 설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공사착수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기존의 주차장으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도서(기존의 주차장으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다)

2.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서 (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4.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제9조(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등)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설치허가증을 받기전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①시장·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준공검사필증(건축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가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교부할 때에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중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의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함에 있어 당해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각하거나 기타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주차장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검사)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건폐율)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2.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3.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6.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도시계획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하여 세분된 지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③도시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1항·제33조·제47조·제48조·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대지가 2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995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 결과 · 처리계획

1995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및 결과

평 창 군 의 회

현 지 확 인 계 획

- 연중 계획된 사업이 일관성 있고 투자가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시책 개선의 자료로 삼아 보완하고 시정하여 시책추진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기본계획

1. 기 간 : '95. 10. 17. ~ 10. 27. (10일간)

2. 대상사업

- '95 군정 주요투자사업중
· 여론화사업, 고액투자사업, 환경보호시책사업등

3. 확 인 자 : 의장의 7인

4. 확 인 반 : 1개반 운영

- 반 장 : 김낙운 의장

- 반 원 : 이경진의원, 유돈문의원, 이상훈의원, 이수현의원,
김두경의원, 우강호의원, 김종영의원

- 사무보조(직원) : 신교선, 함경호, 이정균

□ 세부시행계획

(2023. 10. 17. ~ 10. 27.)

1. 확인일정 및 시간계획

가. 읍면별 확인일정

- 10.17(도암면), 10.18(진부면), 10.19(용평면), 10.20(봉평면),
- 10.23(대화면), 10.24(방림면), 10.25(미탄면), 10.26(평창읍),
- 10.27(현지확인결과 종합)

나. 일일 시간계획

시 간			활 동 사 항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		
-	09:30	-	. 읍면사무소 도착	
09:30	10:30	60	. 사업추진상황보고 청취	읍면장
10:30	12:30	120	. 사업장 현지확인	사업주관부서
12:30	13:30	60	. 중식(현지)	
13:30	16:00	150	. 사업장 현지확인	사업주관부서 협조
16:00	17:00	60	. 현지확인 결과 토의	확인결과집계
17:00	-	-	. 종 료	

2. 현지활동계획

- 가. 조서에 의한 시공여부 점검 및 주민여론 청취
- 나.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파악
- 다.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분석

3. 행정사항

가. 현지활동자료준비

- 대상사업 : 대상사업목록에 의한 전사업<별첨1>
- 자료제공 : 집행부에서 대상사업장별로 추진상황 작성 제공<별첨2>
(읍면사업포함)
- 자료제공일 : '95. 10. 12한
- ※ 현지 출장시 해당사업 설계도 지참요

나. 현지이동차량 대책

- 읍면도착 및 귀가 : 개별
- 현지활동: 의회차량 활용
 - 승용차 운행이 곤란한 지역은 집행기관 지프차 이용(사전검토)

다. 현지활동에 따른 식사문제 : 의회 경비에서 집행

라. 기타사항

- 활동상황별 기록유지
- 보조자료 수집 및 확인순서 확정

□ 집행기관 협조사항

1. 사업추진상황 제출

- 대상사업 : 별첨목록의 전사업 작성(서식 임의조정)
- 제출기한 : '95. 10. 12(목) ('95. 10. 10 기준작성)
- 제출처 : 의회사무과
- 규 격 : A4 복사용지 상철(워드프로세서 작성)
- 편 철 : 읍면별 구분, 표지, 목차, 군발주사업, 읍면발주사업
- 제출부수 : 11부 (합철3부, 분철8)

2. 읍면별 보고장소 준비

- 보고자 : 읍·면장
- 보고장소 : 읍·면별 적의선정(좌석배치도 별첨3)
- 참석자 : 의원, 사업관련부서, 사무보조직원, 기타관련자
- 보고내용 : 확인대상 목록 사업(군 및 타기관 사업 포함)
- 보고진행
 - . 개회선언 및 인사(반장)
 - . 읍면장인사 및 보고(읍면장)
 - . 질의·답변(읍면장, 사업주관부서)
 - . 반장 마무리 인사 및 보고 종료선언(반장)
 - . 현지확인
- 기타사항
 - . 보고장소 마이크 설치불요
 - . 보고시 앉은 자세로 자유스럽고 구체적인 사항을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

3. 현지 사업장 안내

- 사업장 현지에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부서)
- 기타사업과 관련한 확인자료 지참 설명
- 당일 사업장별 현지확인 계획 작성 (당해 읍면별)
- 타기관 관련사업 사전협조 (자료제공, 현황설명, 답변등)

※ 해당부서 공무원만 현지안내 요망

(별첨 2)

○○○ 사 업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과 (읍면)
- 위 치 : 읍면 리
- 사업규모 : 과 읍면
- 사 업 비 : 백만원(총사업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자 담 :
- 시행기간 :
- 현 공 정 :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예 산 액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실제변경내역 (천원)			도 급 업 체	감 득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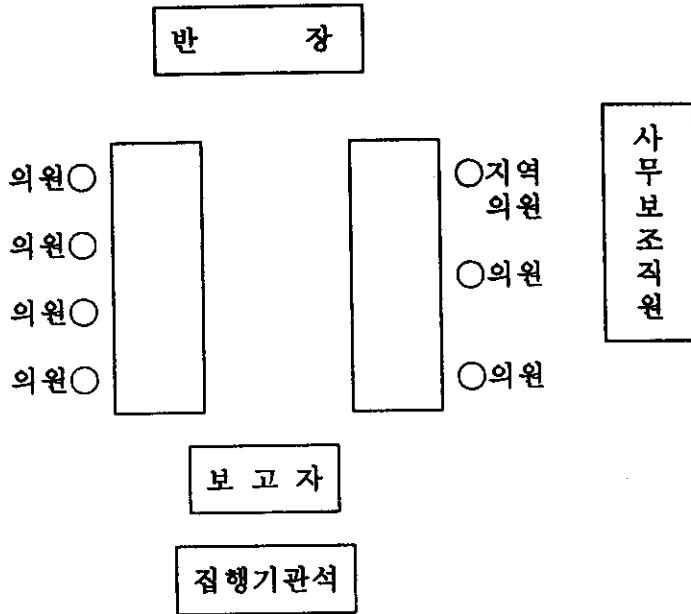
※ 실제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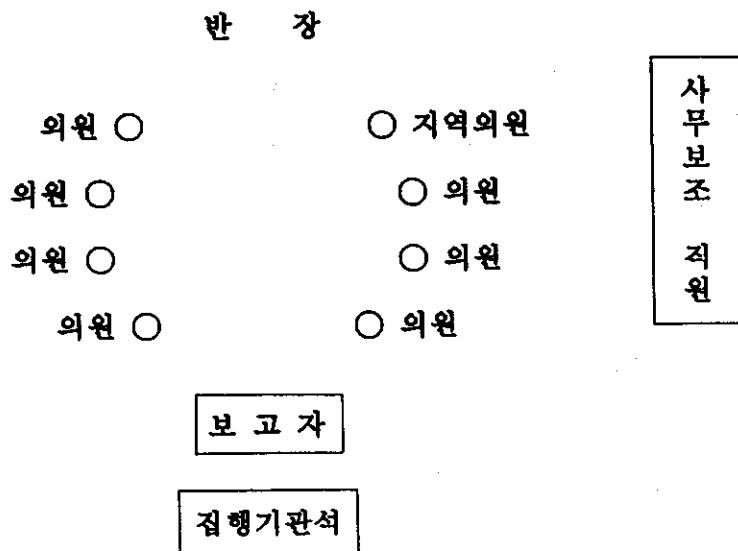
(별첨 3)

< 좌석배치도 >

[4차 배열]



[원탁]



'95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대상사업목록

읍면	사 업 명	비 고
평창읍	1.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토사유출, 예산문제)	문화공보실
	2. 달동네 정비사업	도시과
	3. 평창읍쓰레기매립장 운영 실태	환경보호과
	4. 천변리주차장 포장공사	지역경제과
	5. 지역농업개발센터	농촌지도소
	6.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실태	환경위생사업소
	7. 1군 1명품사업	산업과
	8. 상수도 취수보 설치사업	도시과
	9. 광천음료수개발사업 추진상황	기획실
	10. 평창읍 달동네정비사업	도시과

'95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대상사업목록

읍면	사 업 명	비 고
미탄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탄 ~ 마하간 군도확.포장 사업 2.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 백운리 간이상수도개량사업 4. 회동지구 경지정리 진입로 포장 사업 5.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p>건설과</p> <p>건설과</p> <p>도시과</p> <p>건설과</p> <p>환경보호과</p>

'95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대상사업목록

읍면	사업명	비고
방림면	1. 공설묘지조성사업 2. 공설묘지 진입로 포장공사 3. 계촌3리 소교량 가설 포장 4. 운교1·3리 농어촌도로 포장 5. 계촌지구 경지정리사업 6. 방림삼거리 가로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 방림2리 도수로 보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 운교1리 주차장 포장(소규모주민숙원사업) 9. 방림2리 보·도수로 보수(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 운교3리 간이상수도 신설 11. 계촌4·6리 간이상수도 신설 12. 계촌주차장 포장 . '94년도 주차장 용벽공사(설계도 첨부) 13. 복지회관 종합식당 신축	가정복지과 방림면 방림면 건설과 농지개발조합 방림면 방림면 방림면 방림면 방림면 방림면 방림면 기획실

'95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대상사업목록

읍면	사업명	비고
대화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화문화마을 조성 2. 신리~ 마평간 군도 확.포장 3. 쓰레기 소각장(대화 8리) 4. 대화4리 ~7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5. 미날교 교량사업 6. 대화7리교 교량사업 	<p>건설과</p> <p>건설과</p> <p>환경보호과</p> <p>건설과</p> <p>건설과</p> <p>건설과</p>

'95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대상사업목록

읍면	사 업 명	비 고
봉평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봉평 도읍정비 2.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진조리, 무이2리) 3.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 사업 4. 금산교 가설사업 5. 보광관광시설 사업에 대한 대책 (토사유출, 탁류방류, 수질오염, 생태계파괴 대책 오수및쓰레기 처리 대책등) 	<p>사회진흥과</p> <p>건설과</p> <p>사회진흥과</p> <p>건설과</p> <p>환경보호과</p>

'95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대상사업목록

읍면	사 업 명	비 고
용평면	1. 오지개발 2. 1읍면 1특화사업 3. 군도확·포장(무이 ~상진부간) 4. 농어촌취락구조개선 지구기반시설 확충 5. 장평 오수처리장 6. 청소년수련장 7. 이승복생가터 도로포장 8. 간이상수도시설(백옥포) 9. 고랭지 지하수 개발	사회진흥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사회진흥과 건설과 건설과 산업과

'95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대상사업목록

읍면	사 업 명	비 고
진부면	1. 오대산관광호텔 신축(오.폐수 처리, 향후 부대사 시설계획등)	도시과 환경보호과
	2. 석미아파트 관련 주민 여론에 대한 대책	도시과
	3. 상월오개리 임도 수해 피해 대책기준등 피해보상 기준등 피해보상 상황	산림과
	4. 광역상수도사업추진 상황	도시과
	5. 평창연립주택신축(오.폐수처리 문제)	도시과
	6. 송정택지 추진상황 (문제점 중심)	도시과

'95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대상사업목록

읍면	사 업 명	비 고
도암면	1. 황계1리 진입로 확.포장	사회진흥과
	2. 도암면 청사 신축	재무과
	3. 유천1리 판두교 가설	건설과
	4. 차항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건설과
	5. 황계 수해주택 이주 기반조성 사업	도시과
	6. 병내리 유리온실 운영 실태	산업과
	7. 수하리 군도 정비 관리 실태	건설과
	8. 황계상수도 집수장 관리 실적	도시과
	9. 황계5리 국제트렌스 산림훼손복구 추진상황	산림과

현 지 확 인 결 과

□ 확인개요

- 주 관 : 평창군의회
- 기 간 : 1995. 10. 17 ~ 10. 27 (10일간)
- 대상사업 : '95년도 군정주요투자사업 62개소
- 확 인 반 : 1개반 11명 (의원8,사무보조3명)
 - 총 팔 : 의 장
 - 반 원 : 부의장 , 이정진 , 유돈문 , 이수현 ,
김두경 , 우강호 , 김종영의원
 - 사무보조 : 의회사무과직원 3명
- 주요내용
 - 사업추진의 적정여부 및 예산집행,관리상황
 -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분석
 -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실태
 - 지역주민 여론청취 및 의정활동 정보획득

□ 현지확인결과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읍면	총 대상 사업장	확 인 사업장	개 보 사 업 장	전 완 장	확인일자	비 고
계	62	45	39		'95. 10.17 ~ '95. 10.27	'95.10.21, 95.10. 27 결과종합및미 사업장 재확인
평창읍	10	7	6		10. 26	
미탄면	4	4	4		10. 25	
방림면	13	5	4		10. 24	
대화면	6	4	4		10. 23	
봉평면	5	5	3		10. 20	
용평면	9	5	6		10. 19	
진부면	6	6	5		10. 18	
도암면	9	9	7		10. 17	

나. 확인사업 목록

〈평창읍〉

- ①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
- ② 달동네정비사업
- ③ 평창읍 쓰레기매립장 운영 실태
- ④ 천변리 주차장 포장공사
- 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실태
- ⑥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실태
- ⑦ 1군 1명품사업 (개량머루재배)
- ⑧ 상수도 취수보 설치공사
- ⑨ 광천음료수 개발사업 추진상황
- ⑩ 평창 우회도로 포장공사

〈미탄면〉

- ① 한탄 ~ 마하간 군도 확·포장공사
- ②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회동지구 경지정리 및 진입로 포장공사)
- ③ 백운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 ④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추진상황

〈방림면〉

- ① 공설묘지조성사업
- ② 공설묘지 진입로 포장공사
- ③ 계촌3리 소교량 가설공사
- ④ 운교1~3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 ⑤ 계촌지구 경지정리사업

- ⑥ 방림삼거리 가로등 설치공사
- ⑦ 방림2리 도수로 보수공사
- ⑧ 운교1리 주차장 포장공사
- ⑨ 방림2리 보·도수로 보수공사
- ⑩ 운교3리 간이상수도사업
- ⑪ 계촌4,6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 ⑫ 계촌주차장 포장공사
- ⑬ 복지회관 종합식당 신축공사

〈대 화 면〉

- ① 대화문화마을 조성사업
- ② 신리 ~ 마평간 군도 확·포장공사
- ③ 쓰레기 소각로 운영실태
- ④ 대화 4~7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⑤ 미날교 교량가설 사업
- ⑥ 대화7리교 시설 현황

〈봉 평 면〉

- ① 봉평도읍정비사업
- ②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진조리, 무이2리)
- ③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사업
- ④ 금산교 가설공사
- ⑤ 보광 관광시설 사업에 대한 대책

〈용 평 면〉

- ① 오지개발사업 (저온저장고 시설)
- ② 1읍면 1특화사업 (매주공장)

- ③ 군도 확·포장공사(무이~상진부)
- ④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
- ⑤ 장평 오수처리장 시설사업
- ⑥ 청소년수련장 조성사업
- ⑦ 이승복생가터 도로포장공사
- ⑧ 간이상수도시설(백옥포)공사
- ⑨ 고냉지 지하수 개발사업

〈전 부 면〉

- ① 오대산관광호텔 신축공사
- ② 석미아파트 관련 주민여론에 대한 대책
- ③ 상월오개리 임도 수해피해 대책기준 및 피해보상 기준등 피해보상 상황
- ④ 광역상수도 사업추진 상황
- ⑤ 평창연립주택 신축공사(오·폐수 처리문제)
- ⑥ 송정택지분양 추진상황 (문제점 중심)

〈도 암 면〉

- ① 횡계1리 진입로 포장공사
- ② 도암면 청사신축공사
- ③ 유천1리 판두교 가설공사
- ④ 차항2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 ⑤ 횡계수해주택 이주기반 조성사업
- ⑥ 병내리 유리온실 운영실태
- ⑦ 수하리 군도정비 관리실태
- ⑧ 횡계상수도 집수장관리 실적
- ⑨ 횡계5리 국제트랜스 산림훼손 복구 추진상황

다.사업장별 확인결과

【평창읍】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 중심)	비고
1. 종합문화예술회 관건립공사	<p>가. 건축면적(대·소공연석 704석)에 비해 주차장 시설(83 대) 협소로 대규모 행사시 주차난이 예상 되므로 당초 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됨.</p> <p>나. 공사감독 공무원의 상근으로 시공업체, 발주처, 공사감리업체등과 상호 협조체제를 이룰수 있는 공무원 감독 근무체제를 강화시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p> <p>다. 98년까지의 공사 진행중 총 공사비 증가액(물가 연동제)에 대한 재원 대책및 향후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p> <p>라. 금년 예산에 계상된 총 공사비의 미집행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즉시 수립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이 요구 됨.</p>	
2. 달동네 정비사업	<p>가. 달동네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과거의 도시계획 불합리성에 대한 현지 검토없이 시행하므로 도로 개설등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p>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 중심)	비고
<p>3. 평창읍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p> <p>4.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실태</p>	<p>으므로 현실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재 확정할 필요가 있음.</p> <p>나. 도로 개설 구간 총연장 405m중 중간 연결 도로 개설이 없는 관계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 될 것이 예상되므로 중간 지점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p> <p>가.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피해 농경지에 대한 매입 또는 성토나 토양개량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고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요망 됨.</p> <p>나.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기전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 대책을 수립 하류 지역 수질 오염및 인근 주변 농경지 피해를 최대한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p> <p>가. 분뇨처리 시설의 암모니아 가스가 다량 발생 각종 기기의 부식으로 돌발적인 사고 발생이 우려 되는바 이에 대한 수시점검및</p>	

【 평 창 읍 】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 중심)	비고
5. 1군1명품 사업 (개량머루재배)	<p>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가. 시설물(저온저장고, 작업창고, 포장시설등) 설치 지역의 인근 하천부지및 폐천부지를 매립하여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p>	
6. 상수도 취수보	<p>가. 관문정비로 도로 높이가 1m 높아 졌다고 하나, 취수보설치및 집합정 3기의 설치로 하상이 높아짐에 따라 홍수시 하천 범람의 위험 요인이 있으니 이에 대한 사업 내용을 철저히 분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p> <p>나. 평창 상수도 취수장 상류지역 400m 지점에 후평리 농경지 23만평에서 배출되는 농용수가 취수원으로 방류되어 오염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되는바, 농수로를 취수원 하류쪽까지 연결,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 됨.</p>	

【미 탄 면】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 중심)	비고
<p>1. 한탄~마하간 군도확·포장 공사</p>	<p>가. 한탄~마하간 군도 확·포장공사 구간중 교량입구의 일부 농가에 대한 피해가(급커브 차량전복)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p> <p>나. 공사구간내 농경지 진입로 훼손부분이(경운기 도로) 급경사로 인해 농산물 수송이 어려운바 이에 대한 해소대책 마련이 필요하다.</p> <p>다. 구간내의 터널 노후로 차량 통행시 진동으로 인한 낙석위험이 있는바, 노면각기및 아스콘 포장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할 필요가 있음.</p> <p>라. 터널부분 노후교량 양편에 중량제한 표시를 하는등 안전사고 방지 시설을 할 필요가 있음.</p>	
<p>2. '95봄마무리경 지정리사업 (회동지구 경 지정리및 진 입로 포장공 사)</p>	<p>가. 사업장의 배수로가 낮고 좁아 우기시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요구됨.</p>	
<p>3. 백운리 간이상 수도 개량사업</p>	<p>가. 총 공사비 5,800만원중 주민이 부담토록 된 800만원은 소수 오지가구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 금후 간이상수도 설치시 주</p>	

【미 탄 면】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 중심)	비 고
<p>4.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p>	<p>민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p> <p>가. 우수와 침출수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류지역 오염을 최대한 방지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p>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요철이 심해 동절기 운행이 지남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현 국도에서 최단거리 진입로 개설을 검토하고 노면을 포장하여 차량의 안전 운행을 기 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 됨.</p>	

【 방 립 면 】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 중심)	비 고
1. 공설묘지 조성 사업	가. 인근 지역주민의 편의를 최대 보장하고 철저한 시공으로 재원이 이중 투자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한 분석하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계촌3리 소교량가설 공사	가. '95당초예산에 총사업비 1억2천만원중 3,500만원을 계상, 교각만 설치한 상태이므로 잔여 부분에 대한 마무리 대책을 수립 관련 주민에 홍보하여 선심성, 선거성이라는 의구심을 해소 하여야 할 것임. 나. 추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초 사업자에게 연계 사업을 시킴으로 특혜 시비가 대두하며, 특히 향후 사업이 불분명함에도 추가입찰 한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므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회계관리자 지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 됨.	
3. 운교1.3리 농어촌도로포장 공사	가. 공사대금 집행 잔액이 동사업 지역에 재투자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 할 필요가 있음.	
4. 계촌4.6리 간이상수도시설 공사	가. 개인별 급수 희망자에 대한 지선의 판로 재료가 K.S규격품이 아닌 제품으로 매설 되어	

【 방 립 면 】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 중심)	비 고
	<p>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 관련 주민의 의혹 해소가 필요.</p> <p>나. 급수가구별로 설치한 계량기는 사업 완료후 설치 하여도 늦지 않으나 급수전 설치 함으로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자부담 철회 요구를 하고 있는바, 관련 주민에게 설득력 있는 홍보가 필요함.</p>	

【 대 화 면 】

사업장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 중심)	비 고
<p>1. 대화 문화마을 조성사업</p> <p>2. 신리~마평간 군도확·포장 공사</p>	<p>가. 사업시행사항을 시행청과 협의, 수시 관련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여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p> <p>나. 택지분양 공고이전 분양 우선순위 결정등을 면밀히 검토 지역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가 요구 됨.</p> <p>다. 사업시행과 관련 읍면과 군간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미흡한 바 금후 각종 사업 시행시 관계 부서간 체계적인 연대 구축이 필요 함</p> <p>가. 사업시행시 일부 피해사례(옹벽설치, 주택자금 융자, 사업시행으로 수해 피해 예상 주택 발생등)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나. 지역발전 대책(지역경제 활성화)을 지역주민, 번영회, 향우회등과 연계 공동 관심사를 도출,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사후 문제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면밀한 계획 검토가 필요함.</p>	

【 대 화 면 】

사업장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 중심)	비 고
<p>3. 쓰레기 소각로 운영(대화8리) 실태</p>	<p>가. 쓰레기 소각장의 진입로가 급경사로 결빙시에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동절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p> <p>나. 기기 가동에 필요한 물 유입으로 발생하는 많은 침출수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p> <p>다. 쓰레기 소각로 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열관리 요원, 약품처리 요원등)및 제반시설 운전,유지(유류비,인력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p> <p>라. 압축진개청소차 운행중 도로에 흐르는 오수로 시가지에 악취가 극심하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운영하기 바람.</p>	
<p>4. 대화4리~7리간 농어촌도로확포장</p>	<p>가. 사업시행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먼지 발생, 편입 용지보상, 통행불편등)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동절기 이전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p>	

【 봉 평 면 】

사업장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 중심)	비 고
<p>1. 봉평 도읍정비 사업</p>	<p>가. 봉평도읍정비는 93년부터 시작 되어온 사업으로 현재까지 토지 및 건물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됨으로 행정기관과 보상추진위원회가 유기적인 협의로 보상 문제가 조기 타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나. 도읍정비 추진 미진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군재정에 큰 부담을 줄것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다. 도읍정비로 철거 농가에 대한 택지분양(12 농가)의 조기 발주로 도읍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강구.</p>	
<p>2. 금산교 가설공사</p>	<p>가. 국도와 인접한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 완공 후 사고 유발을 사전 방지하고 연결된 접속 도로 개설에 대한 대책이 검토 되어야 할 것임.</p> <p>나. 현재 야기되고 있는 교량가설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관계 부서가 설득력 있는 홍보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하고 동절기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기 마무리 대책 시행이 요구됨.</p>	

【봉 평 면】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 중심)	비 고
<p>3. 보광 관광시설 사업에 대한 대책</p>	<p>가. 골프장 개발과 관련 평창, 대화, 봉평 지역 주민의 집단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미온적인 것으로 사료 됨.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p> <p>나. 개발을 전후하여 수시 생태계 조사를 실시, 기록을 유지하므로 향후 군민의 피해의식 해소와 시행업체의 책임성 확보가 필요함.</p> <p>다. 개발 시기와 관련 우기를 피하는등 시공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실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선 수시 확인 지도·점검을 실시 지역주민이 선의의 피해가 가 않도록 하고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연대 관리 체제 구축이 필요함.</p>	

【용 평 면】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 중심)	비 고
<p>1. 오지개발사업 (저온저장고시설)</p>	<p>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산권 문제(소유권)등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대책이 요구됨.</p> <p>나. 시설 소유권 및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인해 건물의 하자발생시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처 계획이 미흡할 것으로 사료, 사후 하자발생에 대한 피해를 수혜 주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운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p> <p>다. 향후 동시설과 같은 생산기반시설의 관리권이 지역 농민에게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할 필요가 있음.</p>	
<p>2. 1읍면 1특화사업(매주공장)</p>	<p>가. 동절기 이전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도 지역내서 생산된 원료 전량이 매입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소득 기반시설의 기여도를 제고시킬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대책 강구 필요.</p>	
<p>3. 군도확·장 공사(무이~상전부)</p>	<p>가. 사업추진 공정이 전반적으로 미약한데 금년 내 사업추진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추진 대책을 강구 시행하기 바람.</p>	

【용 평 면】

사업장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 중심)	비 고
	<p>나. 사업시행과 관련한 민원 발생(보상, 생활편의 제공등)을 적극 수렴 주민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고 동절기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이 필요 함.</p>	
<p>4. 농어촌 취락구조개선지구기반시설확충 사업</p>	<p>가. 현재까지 사업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 아 내년 사업 완공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 므로 사업의 조기 착공으로 내년 사업이 마 무리 될 수 있는 특별대책이 필요함.</p>	
<p>5. 장평 오수처리 장 시설 사업</p>	<p>가. 오수처리장의 위치가 하천변으로 장마시 제 방이 유실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의 마무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임.</p> <p>나. 금후 오수처리장 설치시 오염발생이 높은 지역을 다각도로 조사 사업 우선 순위를 정 한후 년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편중의식 해소와 계획성 있는 사업 시 행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p>	
<p>6. 청소년 수련장</p>	<p>가. 이송북 청소년 수련장의 관리 대책이 군 차 원에서 강구 되어야 할 것임.</p>	

【진 부 면】

사업장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 중심)	비 고
<p>1. 오대산관광호텔 신축 공사</p>	<p>가. 오대산관광호텔 신축후 호텔에서 방류되는 오·폐수 처리문제는 주민들의 큰 관심사임에 대한 전반적이 처리 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 지도록 각별한 행정지도가 필요 함.</p> <p>나. 현재 설계상 오·폐수 방류 지점이 광역 상수도 취수지점 5.5km상류에 위치하여 갈수기시 상수도 집수장에 많은 오염원 발생이 우려 되므로 방류지점을 취수지점 하류까지 연결 하는 방안을 기업체와 협의 시행 할 필요가 있음.</p> <p>다. 오·폐수 처리 시설 준공검사시 지역 주민에게 경미한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특약조건을 붙이는등 관련 부서간 종합적인 환경오염 방지 대책 강구가 필요함.</p>	<p>문화공보실 환경호보과</p>
<p>2. 석미아파트관련 주민여론에 대한 대책</p>	<p>가. 사용검사('95. 9. 30)일 전인 '95. 9. 23 설계를 변경, 당초 웅벽으로 계획된 25m 구간을 잔디로 사면처리 하여 사용검사를 필함으로써 우기시 벽면 붕괴 및 토사유출로 지반을 훼손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p> <p>나. 놀이터 시설 옆면 사면처리 대책 강구가</p>	

【진 부 면】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 중심)	비 고
<p>3. 상월오개리 임도 수해피해 대책기준및피해보상기준등피해보상상황</p>	<p>필요함.</p> <p>다. 건물 하자보수와 관련 다수 민원이 대두되는바 이를 파악 지역주민 대표와 행정기관이 협의회를 개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여 주기 바람.</p> <p>가. '93년 수해복구후 '95년 또다시 수해 피해가 발생된 것은 수해복구의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므로 재복구시에는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수립 재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바람.</p> <p>나. 금년 발생된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금후 인재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다. 임도 대부분 구간의 지반이 처져 붕괴 위험에 있는바 관내 전 임도에 대한 위험 지구를 일제 조사 산사태등 위험 지구 정비틀 조속히 시행 하여야 함.</p> <p>라. 측구 및 배수로 관리 소홀로 인해 우수가 노면을 범람 도로 지반이 붕괴되므로 전 임도에 대해, 일제히 측구및 배수로 정비, 도</p>	

【진 부 면】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 중심)	비 고
<p>4. 평창연립주택 신축공사 오· 폐수처리문제)</p>	<p>로 침수로 인한 붕괴및 산사태를 방지하고 경사지에는 목초 또는 나무를 식재 토사가 흐르지 않도록 일제 보수가 필요함.</p> <p>가. 오·폐수 방류지점이 상수원 상류인 점을 고려 처리 시설의 설치및 방류수 관리에 대 한 특별 대책이 요망됨.</p> <p>나. 동시설의 규모, 형태를 면밀히 검토 세원조 사에 철저를 기하고 인근 지역의 훼손 사 항을 파악 환경훼손등의 사례가 없도록 지 도·점검할 필요가 있음.(오·폐수 정화시 설, 산림훼손등)</p>	
<p>5. 송정택지분양 추진(문제점 중심)</p>	<p>가. '95년 당초 송정택지개발 분양 수익금을 10 억원으로 책정 했는데, 현재 5억 미만의 수 입으로 세입에 차질이 우려 되므로 조속한 분양대책 강구가 요구됨.</p> <p>나. 송정택지 분양자(대체준의 8명)에 대한 등 기 절차를 지연 재산권 행사 문제로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함.</p> <p>다. 향후 잔여토지의 매각에 대한 종합적이고</p>	

【진부면】

2019. 12. 31

사업장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 중심)	비 고
	<p>실질적인 분양 대책을 수립 관·민이 공동 대처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음.</p>	

【도암면】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 중심)	비고
1. 도암면 청사신축 공사	가. 공사현장 주변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민원인 및 인근주민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동절기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됨.	
2. 유천1리 판두교 가설 공사	가. 국도 양방향에서 원활한 진입이 가능토록하고 고속도로 통과 구간까지 교량과 도로 고저를 조정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 정비 필요함.	
3. 차항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가. '95. 5월 착공하여 현재 55%의 공사 진척을 보아 금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절기 이전 완공 될 수 있는 특별 대책이 요구 됨. 나. 고냉지대임을 감안 기초 다지기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4. 횡계수해주택이주기반조성 사업	가. 수해 침수지역 거주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 시행하고 관련 주민의 여론(이주에 따른 손실)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당해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도 암 면】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 중심)	비 고
<p>5. 병내리 유리온 실운영실태</p> <p>6. 수하리 군도정비 관리실태</p>	<p>나. 택지분양에 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 이주 대상 주민이 충분히 납득되도록 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홍보 대책이 필요 함.</p> <p>다. 이주 대상 가구에 대한 현 재정지원 대책 을 마련 이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시 행할 필요가 있음.</p> <p>가. 시설 유지 관리상 예상되는 문제를 관련자 합동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 동절기 돌발 사 고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등 합리적인 경영이 이루어 지도록 행정지원 체제를 강구 하기 바람.</p> <p>가. 해빙기 및 우기시에 많은 낙석이 발생되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 한 조속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나. 현재 수로원 1명으로 군도 전구간 정비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수로원 증원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p>	

【도 암 면】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 중심)	비 고
<p>7. 횡계5리 국제 트랜스 산림훼손 복구 추진 상황</p>	<p>가. 수해피해 이후 복구 기간이 상당히 경과 했음에도 현재까지 복구 상태가 미흡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년내 완벽히 마무리 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이 요망 됨.</p>	

평 창 군

우편 232-800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전화(0374)32-2011/담당 유 동 근

문서번호 기획 13700 - *pu*

시행일자 1995. 11. 8 (1년)

발음 평창군의회의장

참조 사무과장

선결	의장	<i>[Signature]</i>	지시	
접	일자	95. 11. 9.	결	부의장
수	번호	206	재·공	과장 <i>[Signature]</i>
처리과			계장	<i>[Signature]</i>
담당자	이장	<i>[Signature]</i>	람	

제목 '95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확인결과 처리계획 통보

[Signature]

1. 평의회 제107호('95. 10. 30)호의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 '95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개선·보완 사업장에 대한 처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합니다.

붙임 : '95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처리계획 1부 끝.

평 창 군



'95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 지 확 인 결 과 처 리 계 획

- 총 대상 사업장 : 62건
- 현지 확인 사업장 : 45건
- 개선·보완 사업장 : 39건

평 창 군

목 차

[평 창 읍]

-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문화공보실)
- 달동네 정비사업(도시과)
- 평창읍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환경보호과)
-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실태(위생환경사업소)
- 1군 1명품사업(개량머루제배)(산업과)
- 상수도 취수보 설치공사(도시과)

[미 탄 면]

- 한탄 ~ 마하간 군도확포장 공사(건설과)
- '95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회동지구경지정리 및 진입로포장공사)(건설과)
- 백운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도시과)
-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상황(환경보호과)

[방 림 면]

- 공설묘지 조성사업(가정복지과)
- 계촌3리 소교량가설 공사(방림면)
- 운교 1·3리 농어촌도로 포장 공사(건설과)
- 계촌4·6리 간이 상수도 시설공사(도시과)

[대 화 면]

- 대화 문화마을 조성사업(건설과)
- 신리 ~ 마평간 군도 확포장공사(건설과)
- 쓰레기 소각로 운영실태(환경보호과)
- 대화4리 ~ 7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건설과)

[봉 평 면]

- 봉평 도읍정비사업(사회진흥과)
- 금산교 가설공사(건설과)
- 보광 관광시설 사업에 대한 대책(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용 평 면]

- 오지개발사업(저온저장고시설)(사회진흥과)
- 1읍면 1특화사업(매주공장)(산업과)
- 무이~상진부간 군도 확포장공사(건설과)
- 농어촌 취락구조개선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도시과)
- 장평 오수처리장 시설사업(환경보호과)
- 청소년 수련장(사회진흥과)

[진 부 면]

- 오대산 관광호텔 신축공사(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도시과)
- 석민아파트관련 주민여론에 대한 대책(도시과)

- 상원오개리 임도수해피해 대책기준 및 피해보상기준등
피해보상상황(산림과)
- 평창연립주택 신축공사 오·폐수처리문제(재무과,환경보호과)
- 송정택지분양 추진(도시과)

[도 암 면]

- 도암면 청사신축공사(재무과)
- 유천1리 판두교 가설공사(건설과)
- 차항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건설과)
- 횡계 수해주택이주기반 조성사업(도시과)
- 병내리 유리온실 운영실태(산업과)
- 수하리 군도 정비 관리실태(건설과)
- 횡계5리 국제트랜스 산림훼손 복구 추진상황(산림과)

현지확인결과처리계획

[평 장 읍]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1. 종합 문화예술 회관 건립공사</p>	<p>가. 건축면적(대·소공연석 704석)에 비해 주차장 시설(83대)함소로 대규모 행사시 주차난이 예상 되므로 당초 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p> <p>나. 공사 감독공무원의 상근으로 시공업체, 발주처, 공사 감리업체등과 상호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는 공무원 감독근무 체제를 강화시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 질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다. '98년까지의 공사 진행 중 총 공사비 증가액(물가 연동제)에 대한 재원 대책 및 향후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p> <p>라. 금년 예산에 계상된 총 공사비의 미집행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즉시 수립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년내에 마무리 할수 있는 특별 대책이 요구됨.</p>	<p>건축면적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각종 행사시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종합 운동장 주차장을 활용토록 할 계획임.</p> <p>공보실에 기술직 공무원 미배치로 사업추진이 지연하므로 공사감독공무원(토목또는건축)을 공보실에 배치 운영하는 방안을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음.</p> <p>국비, 도비, 문예진흥기금 추가 확보를 위하여 중앙단위 관련부서에 다각도로 건의중에 있음. - 기확보 : 2,300백만원 (도비 1,700, 진흥기금 200, 군비 400)</p> <p>총 확보예산 23억중 기 집행한 17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선 착공이 시급한 무대설비공사(기계, 조명, 음향공사등)에 대하여 11월중 발주할 예정임.</p>
<p>2. 달동네 정비사업</p>	<p>가. 달동네 정비사업을 시행 하면서 과거의 도시계획 불합리성에 대한 현지 검토없이 시행하므로 도로개설등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현실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재 획정할 필요가 있음.</p>	<p>향후 평창 도시계획 재정비시 국민학교 앞에서 부터 본 공사 구간으로 진입 할수 있는 도로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 추진 할 계획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3. 평창읍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p>	<p>나. 도로개설구간 총연장 405m중 중간 연결도로 개설이 없는 관계로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불편이 초래될것이 예상 되므로 중간지점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p> <p>가.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피해 농경지에 대한 매입 또는 성토나 토양개량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고 관련주민의 의견을 수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요망됨.</p> <p>나.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기전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 대책을 수립 하류지역 수질 오염 및 인근주변 농경지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하여 연결 시공토록 하겠음.</p> <p>평창읍 중부리 985번지 일대의 침출수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12필지 15,907m²)을 '96 예산에 반영하여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현매립장에 소각시설을 발주중으로 동시설이 완료되면 쓰레기량의 감소로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임.</p> <p>- 소각시설설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평창읍 중부리 985 . 용량 : 1기(195Kg/hr) . 사업비 : 195백만원 . 사업기간 : '95. 10. 10 ~ '96. 4. 7 <p>현매립장 포화상태전 신규매립장조성 및 확장사용 방안을 충분히 사전검토 중임.</p>
<p>4.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실태</p>	<p>가. 분뇨처리 시설의 암모니아 가스가 다량 발생 각종 기기의 부식으로 돌발적인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수시점검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각종 기계부품류 및 모터용량에 따른 종류별 예비조를 '96 당초예산에 확보 구입비치토록 할 계획이며, 암모니아 가스 및 각종 유해 가스 탈취장치의 점차적인 개선과 함께 수시 정비 및 도색 등으로 기계부품의 부식 방지에 노력하겠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5. 1군1명품사업 (개량머루재배)</p>	<p>가. 시설물 (저온저장고, 작업창고, 포장시설등) 설치 지역의 인근 하천부지 및 폐천부지를 매립하여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p>	<p>점용받은 하천부지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향후 사업장 확장의 필요성이 발생시 활용방안을 검토 하겠음.</p>
<p>6. 상수도 취수보</p>	<p>가. 관문정비로 도로 높이가 1m 높아 졌다고 하나 취수보설치 및 집합정 3기의 설치로 하상이 높아짐에 따라 홍수시 하천 범람의 위험요인이 있으니 이에 대한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p> <p>나. 평창상수도 취수장상류 지역 400m지점에 후평리 농경지 23만평에서 배출되는 농용수가 취수원으로 방류되어 오염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농수로를 취수원 하류쪽까지 연결, 상수원을 보호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됨.</p>	<p>평창상수도 취수보 설치는 평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의한 최대 홍수량을 계산하여 통수 단면을 결정후 시공되는 구조물로서 안전성이 사전 검토 되었음.</p> <p>상수도의 상수원은 원수 수질 검사를 매월 실시(하절기 행락에 따른 2급수판정, 그외 1급수 유지)하여 양질의 수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수질의 지속적인 측정을 실시하여 수질변화에 적극 대응 조치코자함.</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1. 한탄~마하간군도 확·포장 공사</p>	<p>가. 한탄~마하간 군도 확·포장공사 구간중 교량 입구의 일부 농가에 대한 피해가 (급커브 차량전복)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p> <p>나. 공사구간내 농경지 진입로 훼손부분이(경운기 도로)급경사로 인해 농산물 수송이 어려운 바 이에 대한 해소대책 마련이 필요함.</p> <p>다. 구간내의 터널 노후로 차량 통행시 진동으로 인한 낙석위험이 있는 바, 노면작기 및 아스콘 포장으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할 필요가 있음.</p> <p>라. 터널부분 노후교량 양면에 중량제한 표시를 하는등 안전사고 방지 시설을 할 필요가 있음</p>	<p>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건물 2동에 대하여는 감정 평가후 지장물 보상토록 하여 철거후 선형을 바로잡아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임.</p> <p>진입로중 수해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은 석축 깔쌓기로 보강하고 경사 구간은 완만히 하여 농산물 수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공이전 조치 할 계획임.</p> <p>현 상태에서 터널은 공사내역에 미포함되어 전면적인 터널 낙석 방지대책이 어려우나 터널내 일부 노면 불량구간은 아스콘 소파보수로 위험요인을 제거할 계획임.</p> <p>설계 하중이 DB18.0으로 통과 하중 32.4톤 이상 통과치못하도록 제한 표지판을 설치 할 계획임.</p>
<p>2. '95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회동지구 경지정리 및 진입로 포장공사)</p>	<p>가. 사업장의 배수로가 낮고 좁아 우기시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요구됨.</p>	<p>'96 경작시기 전까지 경지정리 구역내 배수로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 시공 할 계획임.</p>
<p>3. 백운리간이상수도 개량사업</p>	<p>가. 총공사비 5,800만원중 주민이 부담토록 된 800만원은 소수 오지가구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 금후 간이상수도 설치시 주민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p>	<p>평창군내 간이 상수도는 전체 105개소이며 이는 70년대 시설된 급수시설로 노후 되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간이 상수도의 시설 및 개량의 소요 사업비는 109억 원으로서 군 재정 형편상일시 투자가 어려우므로 우선 시급한 시설별로 주민 자부담을 사전 협의 하여 추진하고 있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4.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p>	<p>가. 우수와 침출수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류지역 오염을 최대한 방지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p>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요철이 심해 동절기 운행이 지남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현 국도에서 최단거리 진입로 개설을 검토하고 노면을 포장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을 기할 수 있는대책이 요구됨.</p>	<p>※ 평창군공동급수시설관리 조례상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50%임.</p> <p>현재 조성중인 미탄 쓰레기 매립장은 하류지역 오염방지를 위하여 우수 및 침출수를 분리 배출하는 시설을 갖출 계획임.</p> <p>정선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신규 진입도로 개설은 불가 의견을 표명하여 현재의 도로를 보수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1. 공설묘지조성사업</p>	<p>가. 인근지역주민의 편의를 최대 보장하고 철저한 시공으로 재원이 이중 투자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한 분석하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p>	<p>인근주민 편의 도모를 위한 마을길 포장 600m 실시 및 묘역 조성사업 설계 및 시공시 상수도 공동 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며, '95년도 12월까지 전체 실시 설계 완료후 타 사업장전학등을 통하여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음.</p>
<p>2. 계촌3리 소교량 가설 공사</p>	<p>가. '95당초예산에 총사업비 1억2천만원중 3,500만원을 계상, 교각만 설치한 상태이므로 잔여 부분에 대한 마무리 대책을 수립관련 주민에 홍보하여 선심성, 선거성이라는 의구심을 해소 하여야 할 것임.</p> <p>나. 추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초 사업자에게 연계 사업을 시킴으로 특별히 시비가 대두하며 특히 향후 사업이 불분명함에도 추가입찰한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므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회계관리자 지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p>	<p>'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96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 하겠음.</p> <p>회계관계 공무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p>
<p>3. 운교1·3리농어촌 도로포장공사</p>	<p>가. 공사대금 집행 잔액이 동사업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 할 필요가있음</p>	<p>공사중 발생하는 민원 해소 및 설계와 현지가 상이하여 추가 시공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후 예산을 증액 투자할 계획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4.계촌4·6리 간이 상수도시설 공사</p>	<p>가.개인별 급수 희망자에 대한 지선의 관로재료가 K.S규격품이 아닌 제품으로 매설 되어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 관련 주민의 의혹 해소가 필요</p> <p>나.급수가구별로 설치한 계량기는 사업 완료후 설치 하여도 늦지 않으나 급수전 설치 함으로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자부담 철회 요구를 하고 있는바, 관련 주민에게 설득력 있는 홍보가 필요함</p>	<p>지선급수공사에 사용된 상수도관은 P.E관으로서 제작회사별로 색깔이 다르게 생산되고 있으나 K.S규격품만 사용하였음.</p> <p>수도미터기 설치에 주민자율에 의한 상수도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하는 것으로서 계량기검침에 의한 관리요금정수로 전기료 납부등 물질약의 효과를 기대코자 하는 시설이며 사업 완료후 시설시는 터파기등 추가 시공에 따른 효율성이 저하됨.</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1. 대화문화마을조성 사업</p>	<p>가. 사업시행사항을 시행청과 협의, 수시관련지역 주민에게 설명하여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대책이 필요</p> <p>나. 택지분양 공고이전 분양 우선순위 결정등을 면밀히 검토 지역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가 요구됨.</p> <p>다. 사업시행과 관련 읍면과 구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가 미흡한 바 금후 각종 사업시행시 관계 부서간 체계적인 연대 구축이 필요함</p>	<p>'93. 2. 23일 대화면사무소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기본구상 설명회를 비롯 2차에 걸쳐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사착공과 관련하여 '95.11중순경 현장사무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임(공청회시 추진계획, 분양계획 방법 용자계획등 모든 제반사항 설명)</p>
<p>2. 신리~마평간 군도 확·포장 공사</p>	<p>가. 사업시행시 일부 피해 사례(옹벽설치, 주택자금 융자, 사업시행으로 수해피해 예상주택 발생등)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나. 지역발전 대책(지역경제 활성화)을 지역주민 변영회, 향우회등과 연계 공동 관심사를 도출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사후 문제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p>	<p>1.공구 교량접속도로 건물소유자에게 본사업의 취지설명 및 주택융자금 알선, 옹벽설치 등 다방면으로 설득중에 있음</p> <p>계획수립시는 지역발전대책등 지역주민 공동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코자 함</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치 리 계 획
<p>3.쓰레기소각로운영 (대화8리)실택</p>	<p>가.쓰레기소각장의 진입로가 급경사로 결빙시에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동절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p> <p>나.기기가동에 필요한 물 유입으로 발생하는 많은 침출수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p> <p>다.쓰레기 소각로 운용에 필요한 기술, 인력(열 관리 요원, 약품처리 요원등) 및 제반시설 운전, 유지(유류비,인력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p> <p>라.압축진개청소차 운행중 도로에 흐르는 오수로 시가지에 악취가 극심하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운영하기 바람.</p>	<p>쓰레기소각장 진입로의 결빙이 우려되는 동절기 동안 가동중지를 검토중이며, 진입도로를 현재보수하여 사용중임. 진입도로 포장사업비를 '96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추진중임</p> <p>소각로가동에 필요한 물은 1일 12.5톤으로 3톤은 수증기로 9.5톤은 폐수로 발생되며, 발생된 폐수는 약품 처리하여 1톤은 방류하고 8.5톤은 재이용하고 있으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침출수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 할계획임.</p> <p>쓰레기 소각을 위한 기술인력 1명 (보일러공)을 '95.11월중 확보하여 가동하고 쓰레기봉투를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구분제작, 배부하였으며 철저한 분리수거로 소각효율을 높여 유지비를 절감토록 할 계획임.</p> <p>압축진개 청소차에 오수배출구를 별도로 만들어 시가지 운행시 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계획임.</p>
<p>4.대화4리~7리간농어촌도로확·포장</p>	<p>가.사업시행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먼지발생, 편입용지보상, 통행불편등)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동절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p>	<p>공사중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며 시공할 계획이며, 11월중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1. 봉평도움정비사업</p>	<p>가. 봉평도움정비는 93년부터 시작되어온 사업으로 현재까지 토지 및 건물 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됨으로 행정기관과 보상추진위원회가 유기적인 협의로 보상 문제가 조기 타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나. 도움정비 추진 미진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군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다. 도움정비로 철거 농가에 대한 택지분양(12농가)의 조기 발주로 도움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강구</p>	<p>사업시행과 병행 보상협의 및 철거 추진중에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착수일 : '95.10.13 - 보상협의 대상 : 22명 - 지장물철거대상 : 16명 - 협의반 운영 : 2개반 <p>. 군 : 1개반</p> <p>. 면, 추진위원회 합동 : 1개반</p> <p>'96군비부담 553백만원으로 사업 마무리 하겠음</p> <p>택지예정지 분양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 : '95. 9. 29
<p>2. 금산교 가설공사</p>	<p>가. 국도와 인접한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 완공후 사고 유발을 사전 방지하고 연결된 접속도로 개설에 대한 대책이 검토 되어야 할 것임</p> <p>나. 현재 야기되고 있는 교량가설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관계 부서가 설득력 있는 홍보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하고 동절기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기 마무리 대책 시행이 요구됨.</p>	<p>접속도로는 당초설계시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본교량은 '94교량일제 점검시 지적된 노후 위험교량으로 금회 정비하는 교량으로 그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였음.</p> <p>착공후 유난히 강우일수가 많고 유량이 많아 실착공이 늦어졌으나 장비, 자재, 인력등을 최대한 투입하여 동절기 이전 완료토록 노력 할 계획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3.보광 관광시설 사업에 대한 대책</p>	<p>가.골프장 개발과 관련 평창, 대화, 봉평지역 주민의 집단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미온적인 것으로 사료됨.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p> <p>나.개발을 전후하여 수시 생태계 조사를 실시, 기록을 유지하므로 향후 군민의 피해의식 해소와 시행업체의 책임성 확보가 필요함.</p> <p>다.개발시기와 관련 우기를 피하는등 시공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실천의지를 재고하기 위해선 수시 확인지도·점검을 실시 지역주민이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연대 관리 체제 구축이 필요함.</p>	<p>보광 스키·골프장 개발민원 대책 협의회 개최 - 일시 : '95.10.27(11:00) - 장소 : 군청소회의실 - 참석 : 군수, 군의원, 군읍면 번영회장, 관리실과장등 23명</p> <p>보광스키·골프장 개발 민원 대책 간담회 개최 - 일시 : '95.10.28(10:00) - 장소 : 군청소회의실 - 참석 : 군수, 부군수, 관련실과장, 평창강오염방지 대책 위원등 25명</p> <p>지역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 시기 : '95. 11월 - 인원 : 30명 이내 - 대상 : 도의원, 군의원, 군읍면 번영회장, 군수, 관련실과장등 - 기능 : 민간기업의 개발사업에 따른 집단민원의 협의·조정·중재</p> <p>사업시행에 따른 영향평가 사후 관리 측면에서 (주)보광으로 하여금 생태계조사 실시를 위한 용역의뢰 협의중임.</p> <p>흙탕물 방지를 위하여 면은천 탁도를 1일 2회 측정하고 탁도 상승시 방류지점을 확인 침사조(저류조)로 유입 정화 되지 않고 무단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1. 오지개발사업 (저온저장고시설)</p>	<p>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산권 문제(소유권)등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대책이 요구됨</p> <p>나. 시설소유권 및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인해 건물의 하자발생시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처 계획이 미흡할 것으로 사료, 사후 하자발생에 대한 피해를 수해주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p> <p>다. 향후 동시설과 같은 생산기반시설의 관리권이 지역 농민에게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할 필요가 있음.</p>	<p>오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건물소유는 군수, 관리운영은 영농조합법인에 무상임대</p> <p>공사계약자로 하여금 하자보증금 예치</p> <p>관리 운영권은 농민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군수명의로 하여야함</p>
<p>2. 1읍면 1특화사업 (매주공장)</p>	<p>가. 동절기 이전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도 지역내서 생산된 원료 전량이 매입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 소득 기반시설의 기여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대책 강구 필요</p>	<p>농지전용에 따른 도로점용협의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전량 매입하여 가공처리를 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 할 계획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3. 군도 확장공사 (무이~상진부)</p>	<p>가. 사업추진 공정이 전반적으로 미약한데 금년 내 사업추진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추진 대책을 강구 시행하기 바람.</p> <p>나. 사업시행과 관련한 민원 발생(보상, 생활편의 제공등)을 적극 수렴 주민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고 동절기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이 필요함</p>	<p>공사착공이 6.15일로 늦게 착공되었으며, 공원사업 시행허가, 관급자재 조달지연, 고속도로 점용허가 지연등으로 늦어졌으나 현재는 모든허가가 완료 되었음</p> <p>년내에는 도사리 교량2개소 및 도로구간 구조물과 선택층까지 포설하여 공정을 70%선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절대공기가 360일로 '96사교이월하여 상반기 이전 준공할 계획임.</p>
<p>4.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지구기반시설 확충사업</p>	<p>가. 현재까지 사업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년내 사업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조기 착공으로 년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특별대책이 필요함</p>	<p>원주소재 신진건설에서 '95.10.18착공하고 현재 구조물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결빙기전 콘크리트등 구조물에 대한 시공완료 및 년내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p>
<p>5. 장평 오수처리장 시설 사업</p>	<p>가. 오수처리장의 위치가 하천변으로 장마시 제방이 유실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의 마무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임.</p> <p>나. 금후 오수처리장 설치시 오염발생이 높은 지역을 다각도로 조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후 년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편중의식 해소와 계획성 있는 사업 시행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p>	<p>오수처리장이 위치한 하천변에 '95수해복구사업시 제방공사를 병행시행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장평리(준용하천) - 예산액 : 30백만원 - 사업량 : 돌망태 L=150m - 사업기간 : '95.11~'96.5월 <p>평창강 발원지 오염원인 '96창동지구 농촌오수처리 시설설치를 강원도와 협의중이나 차집관로의 미설치로 사업확정이 불투명하며 향후 하수도 및 오수차집관로가 완벽한 지구부터 우선선정 시행 계획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자	처 리 계 획
6. 청소년 수련장	가. 이승복 청소년 수련장의 관리대책이 군차원에서 강구 되어야 할 것임.	강원도와 노동리 마을주민간에 야영장관리 위탁계약을 '96년도에 체결하여, 마을에서 이용자에게 일정금액의 청소비등을 징수 운영 할 계획임.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1. 오대산 관광호텔 신축 공사</p>	<p>가. 오대산관광호텔 신축후 호텔에서 방류되는 오·폐수 처리문제는 주민들의 큰 관심사임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 지도록 각별한 행정지도가 필요함.</p> <p>나. 현재 설계상 오·폐수 방류 지점이 광역상수도 취수지점 5.5km상류에 위치하여 갈수기시 상수도 집수장에 많은 오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방류지점을 취수지점 하류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기업체와 협의 시행 할 필요가 있음</p> <p>다. 오·폐수 처리시설 준공검사시 지역 주민에게 경미한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특약조건을 붙이는등 관련 부서간 종합적인 환경오염 방지 대책 강구가 필요함.</p>	<p>오수정화시설 준공까지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시설을 완벽하게 시공토록하여 오수처리로 인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p> <p>진부 상수도 시설에서 월정 상수도까지 송수관로 매설시 하수관을 동시에 매설 할 수 있도록 협의안을 작성 추진 중에 있음.</p> <p>오수 정화시설 준공 검사시 "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할것 " 을 조건으로 제시할 계획이며, 오폐수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p>
<p>2. 석미아파트관련 주민 여론에 대한 대책</p>	<p>가. 사용검사('95.9.30)일 전인 '95. 9. 23설계를 변경, 당초 웅벽으로 계획된 25m구간을 잔디로 사면처리 하여 사용검사를 필함으로써 우기시 벽면 붕괴 및 토사유출로 지반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p> <p>나. 놀이터 시설 옆면 사면처리 대책 강구가 필요함.</p>	<p>임대아파트로서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석미건설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사면 처리된 25m구간을 비롯한 타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발생등의 문제가 발생할시 시설의 보완등 안전시설물이 되도록 즉시 조치할 계획임.</p> <p>'95. 11. 3 사업 주체로하여금 향후대책을 강구토록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안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자	처 리 계 획
<p>3. 상월오개리 임도 수해피해 대책기준 및 피해보상기준 등 피해 보상 상황</p>	<p>다. 건물하자보수와 관련 다수 민원이 대두되는 바 이를 파악 지역주민 대표와 행정기관이 협의회를 개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예방토록 하여 주기 바람.</p> <p>가. '93년 수해복구후 '95년 또다시 수해피해가 발생된 것은 수해복구의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므로 재복구시에는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수립 재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바람.</p> <p>나. 금년 발생한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금후 인재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임대아파트로 건축물 및 부대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 주체인 석미건설에서 아파트 관리단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입주민의 여론을 수렴 집단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수시 행정지도를 실시 하겠음.</p> <p>'93년도 수해복구지가 또다시 피해 발생된 곳은 '95년도 피해지 18개소중 2개소가 있으며 이곳은 복구지 인근에 피해가 생기면서 연이어 발생된 것이며 금년도 복구계획은 임도부분은 산림과에서 산사태부분은 도 환경연구소에서 주관복구하게 되며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설계하고 있음</p> <p>피해 발생지 외에 피해 예상 위험 지구에도 예방을 위하여 '95. 7. 11 사방대상지 면적 13.5ha를 기 강원도에 보고하여 도에서 96예산 반영 계획 중임</p> <p>피해지복구사업비는 모두 책정되어 설계중으로 전면복구 완료되었으나 농작물피해지보상에 대하여는 풍수해 대책법상 보상지급규정이 없으므로 보상 불가하며 피해주민(이장)들에게 국가상대 보상청구 소송 방법외에는 대책이 없음을 의견 전달 하였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치 리 계 획
<p>4. 평창연립주택신축 공사오·폐수처리 문제</p>	<p>다. 임도 대부분 구간의 지반이 처저 붕괴위험에 있는바 관내 전 임도에 대한 위험지구를 일제조사 산사태등 위험 지구 정비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p> <p>라. 측구 및 배수로 관리 소홀로 인해 우수가 노면을 범람 도로 지반이 붕괴되므로 전임도에 대해, 일제히 측구 및 배수로 정비, 도로 침수로 인한 붕괴 및 산사태를 방지하고 경사지에는 목초 또는 나무를 식재 토사가 흐르지 않도록 일제보수가 필요</p> <p>가. 오·폐수 방류지점이 상수원 상류인 점을 고려 처리 시설의 설치 및 방류수 관리에 대한 특별 대책이 요망됨</p> <p>나. 동시설의 규모, 형태를 면밀히 검토 세원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인근 지역의 훼손 사항을 파악 환경훼손등의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음 (오·폐수 정화시설, 산림 훼손등)</p>	<p>'85 ~ '93까지 임도시설지 총 57.70Km중 붕괴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는 조사결과 13.5ha로 '95.7.11강원도에 보고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96 예산 반영 추진중에 있음.</p> <p>매년 임도시설 보수비가 배정되고 있으나 시설량에 비하여 매년 2~3Km정도 임도로 우선 보수지역 부터 정리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보수물량 증배요청하고 있음</p> <p>오수정화시설 방류지점이 상수원상류인 지점을 감안수시지도 점검을 통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고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할 계획임.</p> <p>연립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 부과 누락이 없도록 '96법인 세무조사 계획에 포함시켜 면밀히 조사토록 할 예정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5. 송정택지분양추진 (문제점 중심)</p>	<p>가. '95년 당초송정택지개발 분양 수익금을 10억원으로 책정 했는데, 현재 5억 미만의 수입으로 세입에 차질이 우려 되므로 조속한 분양 대책 강구가 요구됨.</p> <p>나. 송정택지 분양자(라석준외8명)에 대한 등기 절차를 지연 재산권 행사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p> <p>다. 향후 잔여토지의 매각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분양 대책을 수립 관·민이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음.</p>	<p>당초 진부 우회도로 보상 지연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율이 저조하였으며, ('95분양 : 22필지 592,080천원)</p> <p>적극적 분양 홍보로 세수결합 폭을 줄이도록 분양 대책을 강구 추진하겠음.</p> <p>환지등기 신청은 242필지에 대하여 '95.10.23신청 하였으며, 개인별 등기이전은 '95. 11월 중순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할 계획임. (단 라석준 외 8명 1필지에 대하여는 상속등기 준비중으로 상속등기후 소유권 이전등기)</p> <p>미분양 택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양대책을 수립중에 있음. ('95. 11월중)</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1. 도암면청사신축 공사</p>	<p>가. 공사현장 주변에 안전 시설 미설치로 민원인 및 인근주민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동절기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p>	<p>안전사고 표지판 설치 확충 - 면사무소 진입로 입구2개 - 공사장 주변 4개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대책 -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11월말 이후 공사중지 명령조치후 '96년도 3월경 공사재개</p>
<p>2. 유천1리 판두교 가설 공사</p>	<p>가. 국도 양방향에서 원활한 진입이 가능토록 하고 고속도로 통과 구간까지 교량과 도로 고저를 조정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정비가 필요함.</p>	<p>지방도에서 교량까지는 확포장하여 완만한 구매가 되도록 시공할 계획이며, 교량에서 고속도로 BOX구간은 부득이 구매가 있으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확포장할 계획임.</p>
<p>3. 차항2리 농어촌도 로 확·포장사업</p>	<p>가. '95.5월 착공하여 현재 55%의 공사 진척율로 보아 금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절기 이전 완공될 수 있는 특별대책이 요구됨.</p> <p>나. 교냉지대임을 감안기초 다지기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p>	<p>절대공기 240일로 공기상 '95년내에 준공이 어려우나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년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p> <p>노체, 노상, 선택층, 보조기층, 표층등을 시공시 단계별로 장비로 철저한 다짐이 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임.</p>
<p>4. 횡계수해주택이주 기반조성 사업</p>	<p>가. 수해 침수지역 거주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 시행하고 관련 주민의 여론(이주에 따른 손실)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당해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p>	<p>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주민홍보 실시 : '95. 11월중</p> <p>사업추진세부계획 수립시 사실상 수해가 되도록 대책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주권 우선 부여 - 기존주택 철거 보상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5. 병내리 유리온실 운영실태	<p>나. 택지분양에 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 이주대상 주민이 충분히 납득되도록 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홍보 대책이 필요함</p> <p>다. 이주대상 가구에 대한 현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 이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할 필요가 있음.</p> <p>가. 시설유지 관리상 예상되는 문제를 관련자 합동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 동절기 돌발사고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등 합리적인 경영이 이루어 지도록 행정지원 체제를 강구 하기 바람.</p>	<p>월동기 온실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주 행정, 지도소 합동으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공업체인 "지성"으로부터 전문기술인력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유리온실 8동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p>
6. 수하리 군도정비 관리실태	<p>가. 해빙기 및 우기시에 많은 낙석이 발생되어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나. 현재 수로원 1명으로 군도 전구간 정비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수로원 증원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매년 낙석량을 현지 조사하여 낙석방지책 설치 및 보수 낙석제거등 정비하고 있으며, '95.11월에는 낙석방지망을 위험구간에 설치할 계획임.</p> <p>수로원 증원은 현재 군도가 14개 노선으로 전구간에 배치가 되지않은 상태여서 증원은 어려우며 매년 다량의 낙석발생에 대하여는 보수비를 특별히 책정하여 정비하고 있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7. 횡계5리 국제트랜스 산림훼손 복구 추진 상황</p>	<p>가. 수해피해 이후 복구 기간이 상당히 경과 했음에도 현재까지 복구 상태가 미흡 인근주민의 민원 발생이 계속 되고 있으므로 년내 완벽히 마무리 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이 요망됨</p>	<p>'95. 10. 25일 착공 하였으며, '95. 11. 30일까지 복구완료 할 계획임.</p>

- 95년도 하반기 -

군정주요사업추진상황

평 창 군

'95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대상사업현황

읍 면 별	건 수	비 고
계	62	
평 창 읍	10	
미 탄 면	4	
방 립 면	13	
대 화 면	6	
봉 평 면	5	
용 평 면	9	
진 부 면	6	
도 암 면	9	

- 95년도 하반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평 창 음

목 차

-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문화공보실
- 달동네 정비사업 ————— 도 시 과
- 쓰레기매립장운영실태 ————— 환경보호과
- 천변리 주차장 포장공사 ————— 지역경제과
- 지역농업 개발센터 ————— 농촌지도소
-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실태 ————— 위생환경사업소
- 1군 1명품 사업 ————— 산 업 과
- 상수도 취수보 설치사업 ————— 도 시 과
- 광천 음료수 개발사업 추진상황 — 기 획 실
- 평창읍 달동네 정비사업 ————— 도 시 과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문화공보실
- 위 치 : 평창읍 종부리 산66-6의 3필
- 사업비 : 6,655 백만원
 - 도비 1,700 - 군비 : 4,755 - 문예진흥기금 200
- 사업기간 : '94 ~ '98 (5년차 계속사업)
- 현 공 정 : 15% (건축 터파기 및 기계실 지하 거푸집 조립)
- 사업추진상황

시행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백만원)	예산액 (백만원)
1994. 5. 20	1994. 11. 30	1994. 12. 9	총가입찰	1,150	2,300

착공일자	준공일자	설계변경내역(백만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1994. 12. 13	1998. 12. 30	-	-	-	(주)대양	공사감리역 공용

□ 문제점 및 대책

- 도비지원에 비해 군비확보 상대적 저조 ⇒ 국·도비 증액 지원요청에 걸림돌
 - 도비·문예진흥기금 1,900백만원, 군비 400백만원 (17%)
- '96 당초예산 편성시 소요사업비 우선 계상 (955백만원)

달 동 네 정 비 사 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도시계)
- 위 치 : 평창읍 하6리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 = 405m, B = 6 ~ 8m
- 사 입 비 : 240백만원(총사업비 : 690백만원)
 - 군 비 : 240백만원
- 시행기간 : '93. 9 ~ '95. 12. 6
- 현 공 정 : 50%(선택층 부설 및 하수관 매설)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 행 (품 의) 인 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 약 방 법	계 약 금 액	예 산 액
'93. 9	'95. 6. 5	'95. 6. 5	공 개 입찰	189,536 (전기, 토목)	240,000

작 공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실 개 변 경 내 역 (천원)			도 구 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 감 액	변경금액		
'95. 6. 10	'95. 12. 6	-	-	-	유성중하건설 최 상 길	토목 7급 임 현 수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현장이건과 불부합부분 발생(도로와 기존주택 높이 차이)
- 농작물 추수기까지 하수도 인결 지남(통신개장 지남)
- 상수도 관로의 노후로 대체관로매설 필요

○ 대 책

- 10월중 실개변경을 실시하여 주택지와 도로사이의 L형 옹벽설치 검토
- 추수즉시 하수관 시공 및 미시공된 현장사무실 공사비 삭감등으로 상수도 관로
 ∅ 75mm/㎡ 추가시공 검토

평창읍쓰레기매립장운영실태

□ 사업 현황

- 위치 : 평창읍 종부1리 967번지 일대
- 면적 : 5,280㎡
- 매립용량 : 36,960㎡(기매립량 35,297㎡)
- 매립방식 : 단순매립방식
- 매립기간 : '86 ~ '96. 12.

□ 운영 실태

- 정기적으로 월2회 복토실시로 악취 및 위생해충 번식 억제
- 매립장 소독을 위한 동력분무기 확보로 주3회이상 소독실시
- 매립장 전담관리인 2명 상주배치로 청결관리 유지
- 재활용품 보관을 위한 보관창고 신축(규모:21평)

□ 문제점

-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발생('95.8.23)
- 쓰레기매립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하여도 본 지역에 침출수처리시설설치

□ 대책

- 소각시설 설치로 악취 및 위생해충 발생억제, 매립량 감소
 - 규모 : 195kg/hr
 - 사업비 : 195백만원
 - 조달요청 : '95.10.10 계약
- 침출수피해 우려 농경지의 매입으로 주민피해 최소화 및 향후 위생 매립시설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96 당초예산확보계획)
 - 부지매입 : 26,526㎡(8,024평)

천변리주차장포장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평창읍
- 위 치 : 평창읍 천변리
- 사업규모 : 옹벽 L = 130m, 가드레일 L = 130m,
기층 19,09㎡, 표층 18,79㎡
- 사업비 : 68백만원(총사업비)
 - 국비 : 도비 : 군비 : 68 자담 :
- 시행기간 : '94. 8. 1 ~ '95. 9. 6
- 현공정 : 100%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 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예산액 (천원)
'95. 6. 9	'95.6.2	'95.6.5	경쟁입찰	54,307	68,350

착공(예정) 일자	준공(예정) 일자	실제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6.9	'95.9.6	'95.8.10	-	-	세도개발(주)	정원집

※ 실제변경사유 : 물량변동

□ 문제점 및 대책

지역농업개발센터 (우량종묘증식배양시설)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농촌지도소
- 위 지 : 평창읍 여만리
- 사업규모 : 288㎡ (87평)
- 사업비 : 138백만원 (국비 : 69, 군비 : 69)
- 시행기간 : '95. 9. 4 ~ 12. 9
- 현 공 정 : 40%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예산액
'95 8. 10	'95 8. 29	'95. 9. 1	일반경쟁	135, 236	138, 000

작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9. 4	'95. 12. 2				남문건설 (주) <춘천소재>	이병식

□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평창군위생환경사업소현황

□ 시 설

- 위 치 : 평창읍 노론리 125 - 3
- 면 적 : 1,894평 (6,251m')
- 건 평 : 290평 (관리동 67평, 투입동 118평, 처리동 105평)
- 사 업 비 : 1,205백만원 (국비 855백만원, 군비 350백만원)
- 사업 기간 : '91. 11. 27 ~ '92. 11. 15
- 시 공 자 : 상우종합건설(주)
- 사업소승격 : '94. 6. 11평창군 위생환경사업소

□ 직 원

구분	계	일 반 직			기 능 직			일용직	비고
		6급	7 급	8 급	기계	전기	관리		
		환경·화공	보건	기계					
정원	9	1	1	1	1	2	2	1	
현원	6	1	1	-	1	1 (휴직)	2	-	결원 3

□ 분뇨처리

○ 발생 및 처리

구 분	인 구	발생량	처리량	미처리	비 고
계	53,000인	42 kl/일	30 kl/일	12 kl/일	
수세식	22,000인	11 kl/일	11 kl/일	-	
수거식	31,000인	31 kl/일	19 kl/일	12 kl/일	

※ '95. 9월말 현재 처리량 4,355톤

○ 수질기준

구 분	B · O · D (생산화학적 산소요구량)	S · S (부유물질)	대장균군	비 고
분뇨한입시	20,000 (mg/l)	28,000 (mg/l)	-	
처리후법적방류기준	40 (mg/l)	70 (mg/l)	3,000 이하	
현재 처리 측정도	15.6 (mg/l)	6.5 (mg/l)	2 미만	

□ '95년 사업추진 실적

○ 주 용수공급시설 개발 : 지하 암반관정 예비사용 1식 (50,000천원)

- 사업량 : 지하암반관정 1개소
- 사업비 : 금사천육십이만원정 (₩40,620,000)
- 계약일자 : '95. 4. 17
- 착공일자 : '95. 4. 24
- 준공일자 : '95. 5. 15
- 효과 : 1일 용수공급 200톤으로 갈수기에도 공업용수로

충분히 충당하게 되었음.

○ 액상부식조 확장

. 사 업 량 : 150톤 × 1기

. 사 업 비 : 금이천칠백삼십이만육천원정 (₩27,326,000)

. 계 약 일 자 : '95. 6. 16

. 착 공 일 자 : '95. 6. 19

. 준 공 일 자 : '95. 9. 28

. 효 과 : 체류일수 10일에서 13일로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부식으로 처리 효과기대

○ 침사물 저장조 설치

. 사 업 량 : 저장조 (각탱크 침전물) × 1식

. 사 업 비 : 금이천팔백오십만원정 (₩28,500,000)

. 계 약 일 자 : '95. 7. 26

. 착 공 일 자 : '95. 7. 29

. 준 공 일 자 : '95. 9. 20

. 효 과 : 각 탱크에 침전된 침전물을 적정시기에 처리
하므로 각 탱크 용량 활용

□ 문 제 점

1. 각종기계 및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부식화로 돌발적인 사고 예상됨
2. 각조에 조성된 미생물의 생태파악 어려움
3. '96. 1. 1부터 시행되는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류수 수질 허용기준 강화 (BOD : 40PPM-30PPM, SS : 70PPM-30PPM)
4. 각 탱크에 침사된 침전물에 의한 처리작업이 부진(오니케익, 방류수등)
5. 돌발적인 사고(장기적인 정전)등에 대처할 동력시설(발전기)전무
6. 인근 석회석 광산에서 채석목적으로 발파되는 진동으로 인한 지하 암반관정 불안정

□ 대 책

1. '96예산확보로 사고 예방
2. 실험실 기자재 확보로 실험실 운영
3. 유니휠타 여과기 설치로 BOD 및 SS의 방류수 수질허용 기준이내 방류
4. 제사펌프 구입으로 각조에 침사된 침전물 제때수거 용량 활용
5. 발전시설(발전기)구비로 장기적인 정전사고에 대처 시설 정상가동
6. 관련부서 협의 행정지도, 채광 광업권 제한(관리소협의)

1군 1명품 사업

<개량산머루 재배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산업과
- 위 치 : 평창읍 여만리
- 사업규모 : 재배단지 10ha, 저온저장고 1동 (50평),
작업창고 1동 (100평), 포장시설 1식
- 사업비 : 321 백만원 (국비 100, 도비 50, 군비 50, 자담 121)
- 시행기간 : '95. 6. 7 ~ '95. 11. 30
- 현 공 정 : 75 %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 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예 산 액
'95. 6. 7	-	-	보조사업	200,000	200,000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6. 7	'95. 11. 30		-	-	평창산머루 영농조합법인	산업과 이상명

□ 문제점 및 대책 (기타)

평창상수도 취수보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수도계)
- 위 치 : 평창읍 후평리
- 사업규모 : 취수보 L = 167m, 구취수원인결 1식
- 사 업 비 : 320백만원(총사업비)
 - 균 비 : 320백만원
- 시행기간 : '95. 5. 18 ~ '95. 12. 17
- 힌 공 정 : 65%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 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예산액
'95. 3. 11	'95. 5. 9	'95. 5. 16	경 정	199,423	320,000

착공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 변경 내역(천원)			도 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 감 액	변 경 금 액		
'95. 5. 18	'95. 12. 17	-	-	-	(주)효성 조규대	모복 7급 고준태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95. 7. 7)로 준공기한 연장
- 대 책
 - 장비 및 인력투입 보강으로 동절기 이전 완공추진

鑛泉 飲料水 開發事業 推進狀況

□ 推進狀況

1. 鑛泉 飲料水 開發 計劃 樹立 ————— '93. 7. 21

- 대상 지역조사 — 4개 지역(백덕산, 가리왕산, 태기산, 황병산)
- 대상지역 선정 — 평창읍 약수리 산 34번지 일대

〈 선정경위 〉

○ 역사적 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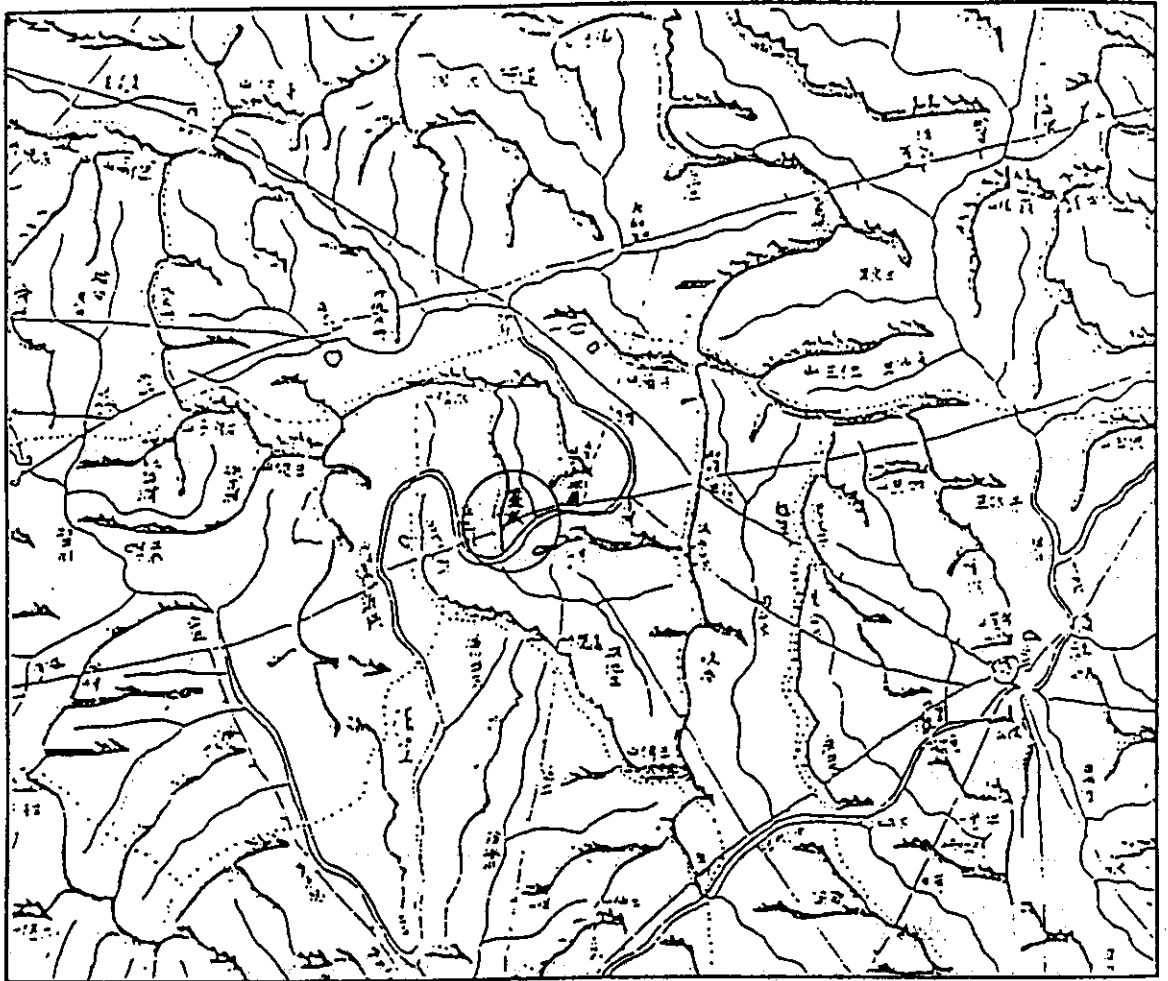
- 조선시대에 작성된 「大東 輿地圖」에 지명이 「藥水」라고 표기
- 平昌郡誌에 약수리에 藥水가湧출되었다는 전설 전래

○ 현지확인

- 약수지역 고령의 老人에 의한 옛날 「藥水터」 위치 考證
- 약수리 일대 지질조사 실시결과 화강암지대 및 맥반석 산재

※ 맥반석이 약수지역 일대에 잔돌이 산재되어 있고, 암맥에 맥반석이 부존되어 있음을 확인

《 大東與地圖上的 藥水地域 》



《 平昌郡誌의 藥水地名 傳說 》

수백년을 물이 철철 용솟음 치고 있었을 것이다. 또 이물에 목욕을 하고는 皮膚病이 고쳐 졌다고 한다. 물은 참 영험 하였다. 그래서 이물을 약수라고 한다. 이물이 영험 하다는 말은 遠近에 널리 알려져서, 물 맞으러 오는 사람이 길을 매우고, 온통 混亂을 빚었다고 한다.

그러는 중에 때로는 문둥병 환자도 끼어서, 이물을 먹고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아서 돌아 갔다고 한다. 이 소문은 널리 퍼졌다. 그리하여 많은 문둥이 떼들이 한꺼번에 들이 닥쳐서, 이고장은 문둥이 등살에 여간 혼란스럽지가 않았다고 한다. 한때는 밥을 빌어 먹는 문둥이 때문에, 주민들은 끼니를 건너뛰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지기도 했다. 주민들은 약수 때문에 날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져 갔다. 마침 이마을에는 기운이 센 장사가 살고 있었는데 절박해진 마을 형편을 알고 장사는 큰 바위를 들고 약수탕을 덮어 버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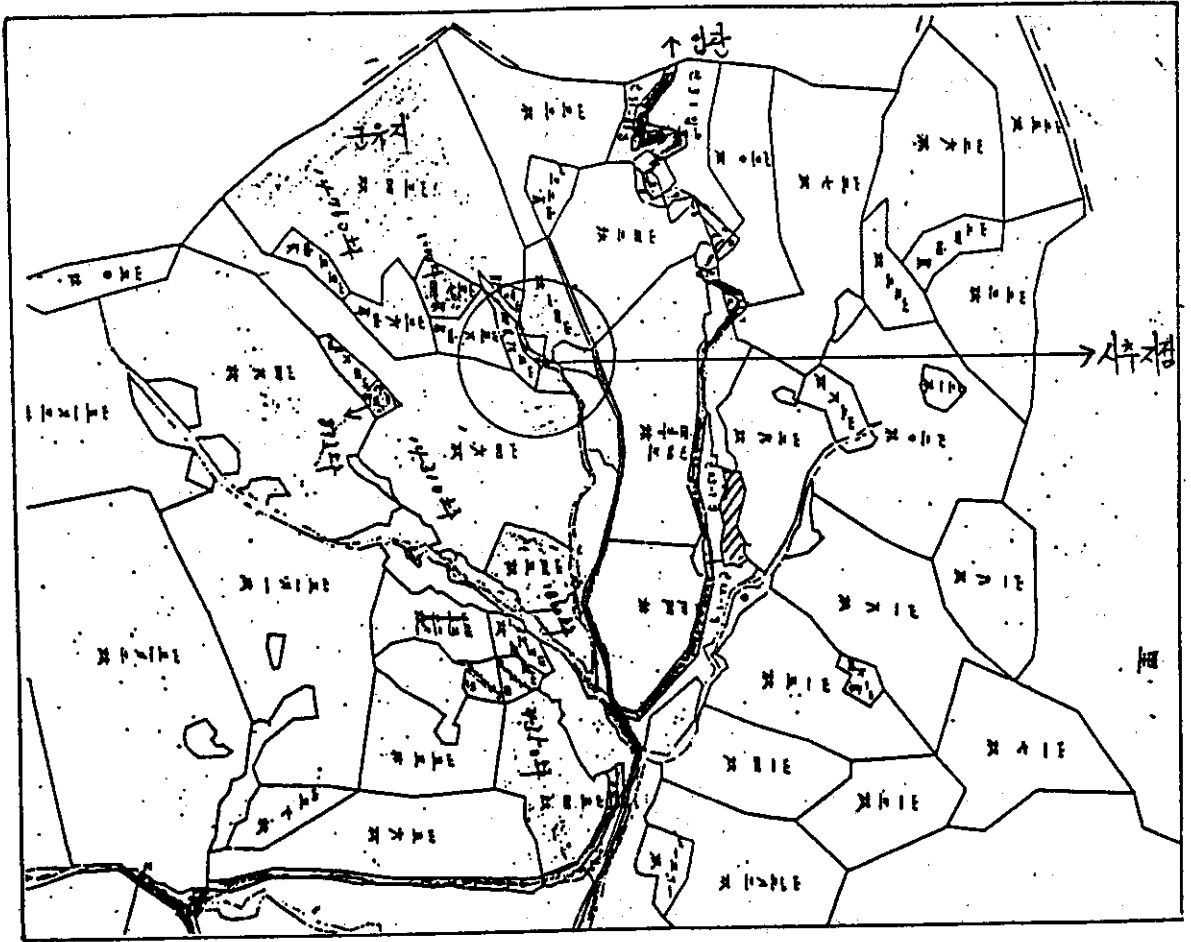
장사가 바위로 물뚜껑을 덮어 버린후 약물은 다른 곳으로 가고 말았다는 이 마을 촌노들의 말씀이다. 약물은 가고 없지만 옛날에 약수가 있었던 마을이라서, 마을 이름을 약수리라고 부르고 지금도 그옛날 약수가 솟았던 곳을 약수터라 하며 맑은 샘물이 솟아 오르고 있다.

2. 鑛泉 飲料水 開發 事業 基本計劃 樹立 —— '93. 8. 27

- 투자방향 : 평창군과 기업 합작 투자
 - 평창군 : 광천수의 수질 보증 · 공인기능
 - 기 업 : 마케팅 기능으로 상호 보완적 역할
- 투 자 비 : 광천수 생산 ⇒ 공동투자 · 마케팅투자비 ⇒ 기업전담
- 합자기업선정 : 평창군과 합작을 희망하는 기업중 기업능력을 판단하여 선정 (자본 · 마케팅 능력)
- 제반절차 : 조례제정, 합작기업조인, 법인설립, 사장임명, 자본금출자, 회사창립, 사업개시

7. 鑛泉 飲料水 試錐計劃 樹立 ——— '94. 8. 16

- 위 치 : 평창읍 약수리
- 시 추 공 : 1 孔



8. 麥盤石의 化學分析 및 鑛物狀態 分析 ——— '94. 11. 17

- 분석기관 : 쌍용중앙연구소 기초 연구실
- 분석결과

성분	SiO ₂	Al ₂ O ₃	CaO	MgO	Na ₂ O	K ₂ O	기타
	규소, 규석	알루미나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산화칼륨	
합량	69.4	17.6	1.1	0.8	2.72	3.91	1.8

9. 試錐豫定地 進入路 및 使用敷地 使用承諾 — '94.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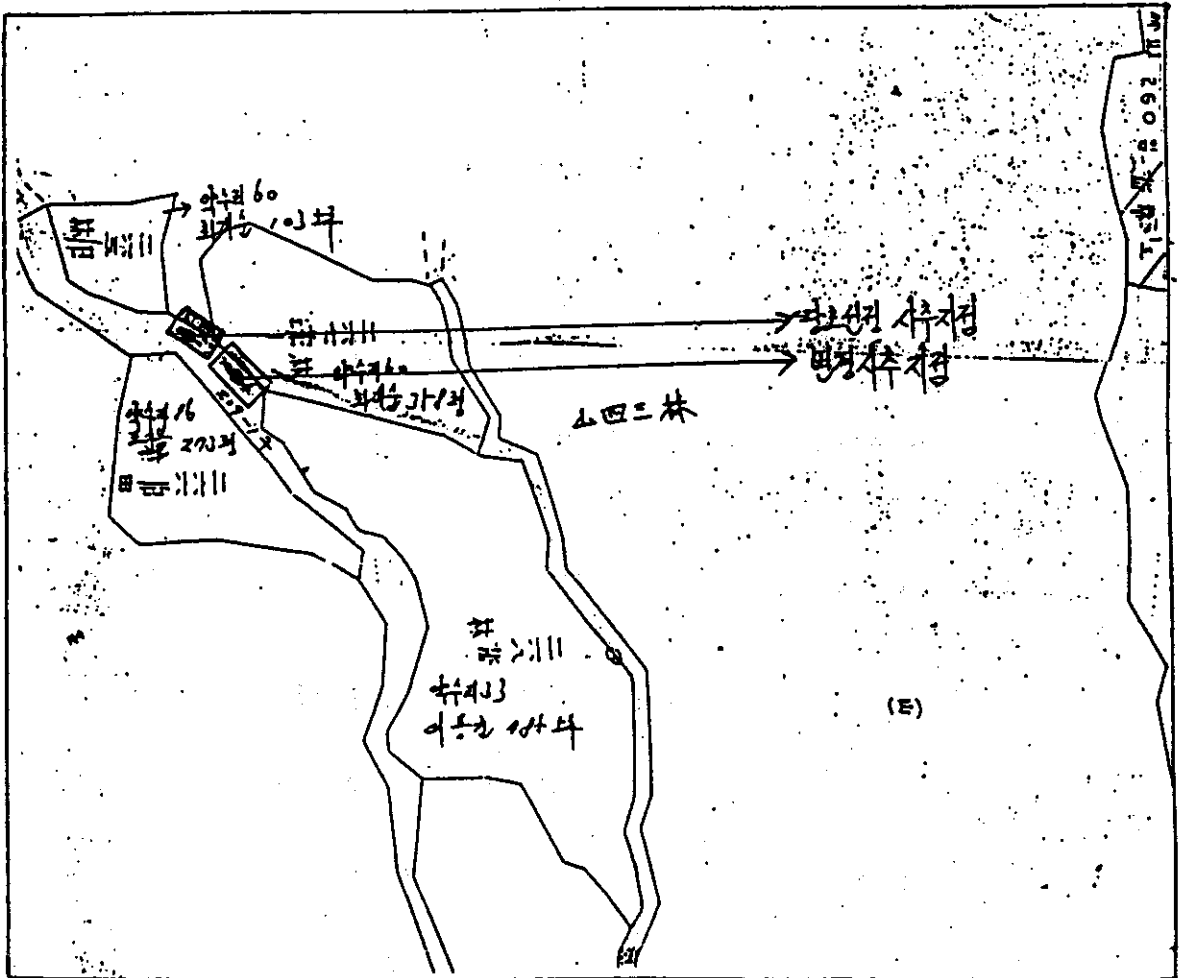
- 대 상 : 2필지 (산 43, 산 267)
- 승 락 : 2필지 (산 43, 산 267)

10. 試錐豫定地 進入路 整備 ————— '94. 11월

- 사 유 : 시추예정지 기존 농로 요철이 심하여 평탄 작업실시
- 협 조 자 : 평창읍 약수리 최성규(리장)

11. 試錐地点 固有財産 無償使用 收益許可 ————— '94. 12. 13

- 시추지점 : 평창읍 약수리 209-1(구거) 63m²



12. 地下水 開發工事 契約 _____ '94. 12. 5

- 사업량 : 1공 (지하 178m)
- 계약금액 : 20,800천원
- 계약자 : (주) 삼신지질 김창영
- 공사기간 : '94. 12. 5 ~ 12. 24

13. 地下水 開發工事 中止 指示 _____ '94. 12. 10

- 사 유 : 지하수 착정지 주변 일부사용토지 사용승락 불가
 - 토 지 : 평창읍 약수리 산41번지
 - 소유자 : 마산시 대외동 9번지 구경희
 - 공사중지기간 : '94. 12. 6 ~ '95. 9. 30
- ※ 중지사유해소 : 토지사용승락불가에 따라 시추지점을 재탐사로
착정지 위치를 하단부로 변경

14. 地下水 開發工事 中止期間 延長 _____ '94. 9. 26

- 사 유 : 착정지(시추지점)의 농경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락을
특하였으나, 농작물 미수확으로 시추장비진입 지난
- 지 번 : 평창읍 약수리 산267번지 (최재순)
- 공사기간연장 : '95. 9. 30 ~ '95. 12. 15

15. 鑛泉 飲料水 (먹는물) 開發事業 目的轉換

○ 목적전환

당 초	변 경
광천음료수 (먹는물) 개발사업	약수리 간이상수도 수원확보

- 사 유: 먹는물 관리법 제정 시행으로,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 수원개발허가 (강원도지사) 를 득하여 수원개발시에는, 수원개발후 경제성 (물수량부족, 미네랄) 없을경우, 시추공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폐공) 를 의무적으로 해야 함으로써, 예산낭비초래

16. 地下水 試錐 施行

- 시추기간 : '95. 11. 1 ~ 11. 20

※ 현재 지하수 개발 계약업체로 하여금 시추준비중

달 동 네 정 비 사 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도시계)
- 위 치 : 평창읍 하6리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 = 405m, B = 6 ~ 8m
- 사업비 : 240백만원(총사업비 : 690백만원)
 - 균 비 : 240백만원(토목공사175,444천원, 전기공사14,092천원, 관급자재23,600천원, 용지 및 지장물보상('94이월)114,545천원)
- 시행기간 : '93. 9 ~ '95. 12. 6
- 현 공 정 : 50%(선택층 부설 및 하수관 매설)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 외) 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예산액
'93. 9	'95. 6. 5	'95. 6. 5	공개 입찰	189,536 (전기, 토목)	240,000

작 공 일 자	준 공 (에 일) 자	설 개 변 경 내 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 감 액	변경금액		
'95. 6. 10	'95. 12. 6	-	-	-	유성종합건설 최 상 길	토목 7급 임 현 수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현장여건과 불부합부분 발생(도로와 기존주택 높이 차이)
 - 농작물 추수기까지 하수도 인길 지난(통신개장 집압)
 - 상수도 관로의 노후로 대체관로매설 필요
- 대 책
 - 10월중 설개변경을 실시하여 주택지와 도로사이의 L형 옹벽설치 검토
 - 추수즉시 하수관 시공 및 미시공된 현장사무실 공사비 삭감등으로 상수도 관로
 - ♣ 75m/m 추가시공 검토

- 95년도 하반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미 탄 면

목 차

- 한탄~마하간 군도확·포장사업 ——— 건설과
- 95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 건설과
(회동지구 경지정리및 진입로 포장사업)
- 백운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 도시과
- 회동지구 경지정리진입로 포장사업- 건설과
-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환경보호과

한탄 - 마하간 군도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미탄면 한탄리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 = 1.1Km(B = 8.0m)
- 사 업 비 : 478백만원(총사업비)
 - 국비 : 353 도비 : - 군비 : 125 자담 : -
- 시행기간 : '95. 5. 10 ~ 12. 31
- 현 공 정 : 68 %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 약 일 자	계약방법	계 약 금 액	예 산 액
'95. 3. 30	'95. 5. 4	'95. 5. 8	공개경쟁	290,640	477,907

작 공 (예정) 일 자	준공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5. 11	12. 31	-	-	-	한국전업(주)	지방토목주사보 김 찬 수

※ 설계변경사유

문제점 및 대책

- 없 음 -

'95 회동지구 경지정리 및 진입로포장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미탄면 창리
- 사업규모 : 구역면적 : 14 ha
 물리면적 : 12 ha
- 총사업비 : 433 백만원
 - 국비 : 199 도비 : 65 군비 : 169 용자 :
- 시행기간 : '94. 11. 8 ~ '95. 5. 23
- 현 공 정 : 100%
- 사업추진상황

(단위:천원)

시행(품외)일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예산액
'95. 11. 11	94. 11. 18	94. 11. 26	공개경쟁	247, 645	297, 418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설계변경내역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4. 11. 28	95. 5. 23	'95 5. 10	89, 965	337, 610	삼경종합 건설(주)	남궁경

- ※ 설계변경사유 :
- 진입로포장 L=680m 증
 - 용수지거 L=956m 증
 - 낙차공 2개소 증

□ 문제점 및 대책

없음

백운리 간이상수도 계량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미탄면)
- 위 치 : 미탄면 백운리
- 사업규모 : 간이상수도 1식
- 사 입 비 : 50백만원(총사업비)
 - 군 비 : 50백만원
- 시행기간 : '95. 10 ~ '95. 12. 20
- 힌 공 정 : 발주중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예정)	계약일자(예정)	계약방법	계약금액	예산액
'95. 10. 14	'95. 10. 20	'95. 10. 23	수 의		50,000

작(예정)일	공(예정)일	준(예정)일	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빈정금액		
'95. 10. 25	'95. 11. 30		-	-	-	-	포무 8급 최준원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농작물 파종으로 인한 시설공사 착공 지연
- 대책
 - 농작물 수확구간 우선시공으로 동절기 이전에 완공추진

미탄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추진상황

사업 현황

- 위치 : 미탄면 백운리 산 1-1번지 일대
- 사업규모 : 소각로 1기(95kg/hr), 매립시설 1식(매립용량 25,000^m)
- 부지면적 : 6,088^m(매입 558^m, 국유림 무상사용 5,530^m)
- 매립방식 : 개량형 위생매립
- 사업비 : 213백만원(기투자 3백만원)
- 국비 : 15, 도비 : 15, 군비 : 183
- 매립가능연한 : 20년
- 시행기간(예정) : '95. 10 ~ '96. 5. 30

추진 사항

- 부지확보 및 임목벌채완료
- 소각시설조달요청('95. 10. 10)계약
- 매립시설 설계용역중

문제점

- 설계용역비(6백만원)적어 설계 도급을 희망하는 용역회사 없음

대책

- 유신설계공단 (주)보광 설계 · 감리업체에 설계용역 의뢰.

- 95년도 하반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방 립 면

목 차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조성사업	_____	가정복지과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진입로 포장사업	_____	방 립 면
<input type="checkbox"/> 계촌3리 소교량가설	_____	방 립 면
<input type="checkbox"/> 운교1.3리 농어촌도로포장	_____	건 설 과
<input type="checkbox"/> 계촌지구 경지정리사업	_____	건 설 과
<input type="checkbox"/> 방림3거리가로등(소규모주민숙원)	_____	방 립 면
<input type="checkbox"/> 방림2리도수로보수(소규모주민숙원)	_____	방 립 면
<input type="checkbox"/> 운교1리주차장포장(소규모주민숙원)	_____	방 립 면
<input type="checkbox"/> 방림2리보·도수로보수(소규모주민숙원)	_____	방 립 면
<input type="checkbox"/> 운교3리간이상수도(소규모주민숙원)	_____	방 립 면
<input type="checkbox"/> 계촌4.6리 간이상수도 신설	_____	도 시 과
<input type="checkbox"/> 계촌 주차장 포장	_____	방 립 면
<input type="checkbox"/> 복지회관 종합식당 신축	_____	사회진흥과

공설묘지 진입로 포장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방림면
- 위 치 : 방림면 방림2리 (배골)
- 사업규모 : ○포장 L= 638m (B=3.5m)
 - 옹벽 (H=3.8m) L=48m
 - 횡배수관 지름600mm L=7.5m
 - 집수정 1개소
 - 암거 (3.0 × 1.5) L=6.8m
- 사 업 비 : 80 백만원(총사업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80,000천원 자담 :
- 시행기간 : '95. 4. 20 ~ '95. 10. 28
- 현 공 정 : 6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 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예산액 (천원)
'95. 4. 20	'95. 7. 20	'95. 7. 25	일반경쟁	40,920	80,000

착 공 (예정) 일자	준 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7.31	'95 10. 28				합) 삼성보건	지방토목 서기 조 현 희

* 설계변경사유

계촌3리 소교량 가설 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방림면
- 위 치 : 방림면 계촌3리
- 사업규모 : 교대2기, 교각1기
- 사업비 : 35 백만원
 - 국비 : 도비 : 군비 : 35백만원 자담 :
- 시행기간 : '95. 4. 1 ~ 6. 9
- 현공정 : 10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예산액
'95. 4. 1	'95. 4. 11 (추가입찰)	'95. 4. 12	일반경정	26,900	35,000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4.13	'95.6.9				주) 선우건설	지방토목 주사 장근용

* 설계변경사유

운교 1-3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방림면 운교리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 = 2.6Km(B = 6.5m)
- 사업비 : 755백만원(총사업비)
 - 국비 : 647 도비 : - 군비 : 108 차담 : -
- 시행기간 : '95. 5. 9 ~ 12. 31
- 현 공 정 : 62 %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 금	예산액
'95. 3. 30	'95. 4. 29	'95. 5. 6	공개경쟁	518,212	755,120

작 공 (예정) 일 자	준공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5. 9	12. 31	-	-	-	(주) 대 도	지방토목서기 정 기 화

※ 설계변경사유

문제점 및 대책

없 음 -

'95 봄마무리 계촌지구 경지정리사업

□ 사업개요

- 시행처 : 평정농지개발조합
- 위치 : 방림면 계촌리
- 사업규모
 - ┌ 구역면적 : 44.94 ha
 - └ 용리면적 : 41.46 ha
- 사업비 : 1,083,500 백만원 (총사업비) ※ 환지비 포함
 - 국비 : 673,201 도비 : 235,403 군비 : 174,896 자담 :
- 시행기간 : 1994. 11. 25 - 1995. 5. 30
- 현공경 : 10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예산액
'94. 11. 11	'94. 11.18	'94. 11.23	지역제한 경쟁	751,326	887,238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4. 11.25	'95. 5.30	'94. 4.25	증 73,041	824,367	대림종합 건설(주)	토목기수 최상수

※ 설계변경사유

- 토공배수로 → 수로판 변경 L = 824 m
- 토취장복구비 → 당초 누락되어 계상보완
- 식력제거비 → 당초누락되어 계상보완
- 기타 1식 → 기타 증.감사항 보완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지하수 용출로 인한 일부필지 배수저하
- 대책 : 지구내 지하수 용출이 과다한 지구로서 사업실시후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일부필지는 사업실시후에도 완전전답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으로 전작으로 하였을 경우 감수가 우려되고 있음.

당해필지는 대의원 총회를 거쳐 원지환지를 실시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가급적이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치가 용이한 필지에 대하여 지하수 처리작업을 유도하여 경작의 원판을 도모하는 한편 경작자에 대하여도 전작을 지양하고 경지정리사업 본래의 목적인 답작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방림삼거리가로등)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방림면
- 위 치 : 방림면 방림2리
- 사업규모 : 강관주 8등
- 사업비 : 8,450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 : 8,450천원 자담 :
- 시행기간 : '95. 4. 1 ~ '95. 4. 12
- 현공정 : 10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예산액(천원)
'95. 4. 1		'95. 4. 4	수의계약	8,450	

착공(예정)일 자	준공(예정)일 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금업체	감독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4. 6	'95 4. 12				신전전기공사	

* 설계변경사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방림2리도수로보수)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방림면
- 위 치 : 방림면 방림2리
- 사업규모 : ○옹벽 L= 20m H=4.0m
○도수로 L=20m B=1.0m
- 사 업 비 : 20 백만원(총사업비)
 - 국 비 : 도 비 : 군 비 :20백만원 자담 :
- 시행기간 : '95. 3. 5 ~ '95. 5. 1
- 현 공 정 : 10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예산액(천원)
'95. 3. 5		'95. 3. 23	수의계약	13,956	

작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3. 25	'95 5. 1				합) 태창건설	지방토목서기 임성진

* 설계변경사유

소규모주민숙원(운교1리주차장포장)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방림면
- 위 치 : 방림면 운교1리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 146m , B= 3.5
- 사 업 비 : 10,556천원
 - 국 '비 : 도 비 : 군 비 : 10,556천원 자담 :
- 시행기간 : '95. 4. 1 ~ '95. 4. 10
- 현 공 정 : 10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예 산 액(천원)
'95.4.1공사 중지명령해지		'95. 4. 1	수익계약	10,556	

착 공(예정)일 자	준 공(예정)일 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4. 1	'95 4. 10				주)선우 건설 김 정 규	지방토목 서기 임 성 진

* 설계변경사유

소규모주민숙원(방림2리 보·도수로 보수)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방림면
- 위 치 : 방림면 방림2리
- 사업규모 : 옹벽 및 도수로 L=6.9m, B=1.0m, H=4.0m
- 사업비 : 3,458 천원
 - 국'비 : 도 비 : 군 비 :3,458천원 자담 :
- 시행기간 : '95. 3. 18 ~ '95. 4. 30
- 현 공 정 : 10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예산액 (천원)
'95. 3.18		'95. 4. 3	수익계약	3,337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 금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4.10	'95 4. 30				방림건설 정종화	지방토목 서기 임성진

* 설계변경사유

소규모주민숙원(운교3리 간이상수도)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방림면
- 위 치 : 방림면 운교3리
- 사업규모 : 수도관, 물탱크 1식
- 사업비 : 3,500 천원
 - 국비 : 도비 : 군비 : 3,500천원 자담 :
- 시행기간 : '95. 4. 26 ~ '95. 5. 4
- 현공정 : 10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예산액(천원)
'95. 4. 26		'95. 4. 26		3,500	

착공(예정)일 자	준공(예정)일 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 급업 체	감 독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4. 26	'95 5. 4				자재: 평창PVC 장비: 대지중기	

계촌4, 6리 간이상수도 신설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수도계)
- 위 치 : 방림면 계촌 4.6리
- 사업규모 : 상수도시설 1식 (600 T/D)
- 사 입 비 : 200백만원(총사업비)
 - 군 비 : 200백만원
- 시행기간 : '94. 7. 4 ~ '94. 12. 29
- 현 공 정 : 100%(완공)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당초)	예산액
'94. 6. 14	'94. 6. 29	'94. 7. 5	경 쟁	89,254	200,000

작 공 일 자	준 공 일 자	실 개 빈 경 내 의 (천원)			도 급 인 채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 감 액	빈 경 금 액		
'94. 7. 10	'94. 12. 29	'94. 12. 8	증35,746	125,000	삼호건설(주) 이 운 규	토목 7급 고 준 태

※ 설계빈경 사유 : 지하수 개발지점의 착정에 따른 송배수관로 위치빈경 및 시가지
경계석 교체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신설상수도에서 간이급수시설관로에 연결 사용시 기존관로의 노후로 인한 누수과다로 정상급수 불가

○ 대 책

- '95. 7. 31 주민회의시 개인별 급수희망자(자부담500천원)에 한하여 급수공사 추진협의 후 현재까지 급수신청 60가구중 47가구를 완료하고 농작물 미수확구간의 가구는 '95. 10. 30까지 완료계획

계촌 주차장 포장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방림면
- 위 치 : 방림면 계촌4리
- 사업규모 : 콘크리트 포장 T= 20cm 1557.5㎡
- 사업비 : 30 백만원
 - 국비 : 도비 : 군비 : 30백만원 자담 :
- 시행기간 : '95. 5. 22 ~ '95. 8. 18
- 현 공 정 : 100 %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 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예산액 (천원)
'95. 5.22		'95. 7. 7	수의계약	16,840	30,000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금 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7.10	'95 8. 18	'95 8. 1	증가 2,550	16,840	합) 태창건설	지방토목 서기 조 현 희

* 설계변경사유 : 주차장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주변환경 정화효과를 얻고자 주차장우측 유휴지를 추가 시공함.

방림면 피로연장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위 치 : 방림면 방림2리
- 사업규모 : 피로연장 A=195㎡ (약 60평)
- 사 업 비 : 50 백만원 (총사업비)
 - 국비 : 도비 : 50 군비 : 자담 :
- 시행기간 : '95. 9. 19 ~ '95. 12. 18
- 현 공 정 : 15 %
- 사업추진현황

시행(품의)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예 산 액 (천원)
'95. 8. 12	-	'95. 9. 19	수의계약	건축 43,100 전기 1,910	50,000

착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9. 20	'95. 12. 18	-	-	-	(합) 청양건설 이 남 용	지방건축주사 보 김 용 기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 95년도 하반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대 화 면

목 차

- 대화 문화마을조성 ————— 건설 과
- 신리~마평간 군도확·포장 ————— 건설 과
- 쓰레기 소각장(대화8리) ————— 도 시 과
- 대화4리~7리간 농어촌도로확·포장- 건설 과
- 미날교 교량가설 사업 ————— 건설 과
- 대화7리교 시설현황 ————— 건설 과

대화문화마을조성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농어촌진흥공사 위탁시행)
- 위 치 : 대화면 대화5리
- 사업규모 : 택지조성 63,043㎡ (19,070평) . 주택신축 81호
- 총사업비 : 5,614백만원
 - 국비 : 1,694 도비 : 363 군비 : 363 용자 : 3,194
- 시행기간 : '94~ '97 (4년차)
- 현 공 정 : 37%
- 사업추진상황

(단위: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예산액
'95. 6. 10	'95. 6. 23	'95. 7. 6	공개경쟁	951,726	1,314,654

작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설계변경내역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7. 6	'96. 7. 5	-	-	-	두일종합건설(주)	남궁경

□ 문제점 및 대책

- 현재 추진중인 문화마을조성지구는 국토이용관계법상 경지지역으로서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도시계획지구로의 변경을 선행한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도시계획편입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있는 실정임.
 - 도시과 납번 → '95. 10월말 면적결정 계획임.

신리 - 마평간 군도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대화면 신리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 = 2.5Km(B = 8.0m) 선택층 부설
- 사 업 비 : 966백만원(총사업비)
 - 국비 : 706 도비 : - 군비 : 261 자담 : -
- 시행기간 : '95. 5. 10 ~ 12. 31(절대공기 365일)
- 현 공 정 : 62 %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 약 일 자	계약방법	계 약 금 액	예 산 액
'95. 3. 30	'95. 5. 4	'95. 5. 10	공개경쟁	641,113	965,807

작 공 (예정) 일 자	준공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5. 10	12. 31	-	-	-	유성종합건설	지방토목주사보 김 찬 수

※ 설계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 절대공기 부족으로 '96년도 이월사업 마무리

대화쓰레기소각장

사업 현황

- 위치 : 대화면 대화8리 734-1번지 일대
- 부지면적 : 32,244㎡
- 사업내용
 - 소각시설 1기(300kg/hr), 위생매립시설(매립면적16,900㎡)기타부대시설
 - 재활용품선별창고 1동(55평), 장비(압축기 1대, 자동상차용콘베어1대)
- 사업비 : 2,214백만원(기투자 514백만원)
- 사업기간 : '93 ~ '97. 12.

추진 상황

- 부지매입완료 : 32,244㎡(195백만원)
-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완료(옹벽, 용수공급시설) : 220백만원
 - 소각시설 시공자 : 고려소각로공업(주) 김향원
-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장비확보 : 52백만원
 - 창고 55평, 압축기 1대, 자동상차용콘베어 1대
- 위생매립시설 설계용역 완료 : 47백만원

문제점

- 위생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미확보 : 1,700백만원

대책

- 진입로포장 및 매립장조성 30%에 대한 공사비(400백만원)의 군비 확보 추진 ⇒ '96 당초예산확보계획
- 매립장조성 70%잔여분에 대한 공사비(1,300백만원)의 국비지원으로 사업마무리 ⇒ '97 국비지원요청

대화 4 - 7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대화면 대화 4리
- 사업규모 : 교량가설 3 / L = 45m, 도로확장 L = 0.3Km (B = 6.5m)
- 사업비 : 437백만원(총사업비)
 - 국비 : 377 도비 : - 군비 : 60 자담 : -
- 시행기간 : '95. 6. 5 ~ 12. 31
- 현 공 정 : 48 %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 금액	예산액
'95. 4. 6	'95. 5. 22	'95. 5. 30	공개경쟁	282,633	437,089

작 공 (예정) 일 자	준공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6. 5	12. 31	-	-	-	하나건설	지방토목서기 정 기 화

※ 설계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 없 음 -

교량 가설 사업

(미 날 교)

기존 교량의 노후로 교대, 교각, 슬래브등이 균열 또는 파손되어 교량안전 점검결과 노후 위험 교량으로 지정되어 대형차량 (4.5TON)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음.

○ 현황 또는 사업개요

- 위 치(구간) :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 대화면 상안미리
- 사 업 량 : 교량가설 L = 120.0M (B = 7.0M)
- 사 업 기 간 : '96. 4. ~
- 총 사 업 비 : 1,152백만원

○ 추진계획

(단위 : M, 백만원)

사업계획		기투자		'96 계획		금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교량가설 L=120.0M (B=7M)	1,152	-	-	120M	1,152	-	-	

○ 문제점 및 대책 (건의)

- 군비 재원부족으로 미가설중에 있는 교량으로 '96년도 당초예산 확보 요망

대화7리교 시설현황

□ 현 황

- 위 치 : 대화면 대화7리
- 규 모 : 길이 41m, 폭 3.4m, 높이 4.5m
- 구 조 : 중력식, 슬라브
- 건설년도 : 1972년

□ 위험요인

- 시설물 노후
- 차량통행시 진동 극심

□ 조치사항

- 응급대책
 - 차량통행금지 표지판 설치
- 향후대책
 - '96예산반영 교량재가설 사업 추진계획
 - 소요사업비 : 160백만원

- 95년도 하반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봉 평 면

목 차

<input type="checkbox"/> 봉평 도움정비	—————	사회진흥과
<input type="checkbox"/>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진조리, 무이2리)	—————	건설과
<input type="checkbox"/>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사업	—————	사회진흥과
<input type="checkbox"/> 금산교 가설사업	—————	건설과
<input type="checkbox"/> 보광 관광시설사업에 대한 대 책	—————	환경보호과

봉평도읍정비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위 치 : 봉평면 창동리
- 사업규모 : 용지보상 305건, 도로확포장 1,662m, 하수관 2,268m, 상수관 2,384m
- 사업비 : 4,228 백만원 (총사업비)
 - 국비 : 454 도비 : 610 군비 : 3,164 자담 :
- 시행기간 : '93. 8. ~ '96. 6.
- 현 공 정 : 30 %
- 사업추진현황

시행(품의)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예산액(천원)
'93. 8. 6	'93. 10. 4	'93. 10. 11	경쟁입찰	418,308	497,915

착공(예정)일 자	준공(예정)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도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3. 10. 13	'96. 6. 30	-	-	-	부영산업김기현	지방토목공사중수

□ 문제점 및 대책

- 문 제 점
 -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 도읍정비 마무리 사업비 부족 (553백만원)
- 대 책
 - 추진위원 및 담당공무원 개별 접촉 설득
 - 부족사업비 '96 당초예산 확보

무이 1-2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봉평면 무이리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 = 1.0Km(B = 6.5m)
- 사 업 비 : 289백만원(총사업비)
 - 국비 : 250 도비 : - 군비 : 39 자담 : -
- 시행기간 : '95. 6. 19 ~ 12. 31
- 현 공 정 : 55 %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 약 일 자	계약방법	약 금 액	예 산 액
'95. 4. 15	'95. 6. 15	'95. 6. 19	공개경쟁	173,512	289,950

착 공 (예정) 일 자	준공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계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6. 19	12. 31	-	-	-	(주)한국전업	지방토목서기 정 기 화

※ 설계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 없 음 -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위 치 : 봉평면 창동1리
- 사업규모 : 도로포장 L=170m, B=3.0m, 흡판매설 (φ 450) 5m
- 사 업 비 : 10 백만원 (총사업비)
 - 국비 : 도비 : 10 군비 : 자담 :
- 시행기간 : '95. 5. 8 ~ 6. 6
- 현 공 정 : 100 %
- 사업추진현황

시행(품의)일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예산액(천원)
'95. 3. 31	-	'95. 5. 4	수의계약	9,676	10,000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5. 8	'95. 6. 6	-	-	-	창하건설 김연하	지방토목서기 우경운

※ 설계변경사유 : -

□ 문제점 및 대책

금산교 가설공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봉명면 평촌리
- 사업규모 : 교량가설 L = 33m(B = 7.0m)
- 사업비 : 300백만원(총사업비)
 - 국비 : - 도비 : - 군비 : 300 자담 : -
- 시행기간 : '95. 6. 20 ~ 12. 31
- 현 공 정 : 40 %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 약 일 자	계약방법	계 약 금 액	예 산 액
'95. 4. 15	'95. 6. 15	'95. 6. 20	공개경쟁	187,651	300,000

과 공 (예정) 일 자	준공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6. 20	12. 16	-	-	-	(주)신우건설	지방토목주사보 정 기 화

※ 설계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 없 음 -

(주)보광관광시설사업에 대한 대책

【 토사유출방지대책 】

□ 사업 개요

- 위 치 : 봉평면 무이리, 면은리 일원
- 사업 자 : (주)보광 대표 오광열
- 사업 비 : 3,883억
- 총용지면적 : 3,483,420㎡(1,053,734평)
 - 스키장지구 : 1,831,892㎡(554,147평)
 - 단지 지구 : 610,837㎡(184,778평)
 - 골프장지구 : 1,040,691㎡(314,809평)

□ 토사유출(흙탕물)방지시설 설치내역

구 분	방지시설명	설 치 수	용 량	비 고
계		10개소	112,200㎡	
스키장지구	침사지 (저류조)	3	51,000㎡	
단지 지구	"	3	9,700㎡	
골프장지구	"	4	51,500㎡	

□ 기 타

- 부유물질(suspended solids) 침전을 위한 물리화학적처리시설
→ 1식 증설(응집제투여 및 중화처리를 위한 약탱크 3기설치)

【 토사유출방지현황】

□ 침사지 설치현황

○ 스키장지구

- 제1침사지 : 500m²
- 제2침사지 : 50,000m²
- 제3침사지 : 500m²

소계 : 51,000m²

○ 단지지구

- 제1침사지 : 3,100m²
- 제2침사지 : 4,500m²
- 제3침사지 : 2,100m²

소계 : 9,700m²

○ 골프장지구

- 제1침사지 : 4,900m²
- 제2침사지 : 32,400m²
- 제3침사지 : 13,200m²
- 제4침사지 : 1,000m²

소계 : 51,500m²

합계 : 112,200m²

□ 물리화학적처리시설 ————— 1식

- 부유물질(흙탕물)침전을 위한 응집제투여 약탱크
→ 3기(1m²×3기)

□ 행정사항

- 강원도 문체 82130 - 927('95. 7. 8)호로 공사중지명령 조치됨
- 강원도 문체 82130 - 1291('95. 9.20)호로 전면 공사중지명령 조치됨
- 강원도 문체 82130 - 1367('95.10. 6)호로 공사재개 통보

【 생태계 파괴대책 】

하천 현황

구분 하천명	구 간		연 장 (km)	면 적 (㎡)	비 고
	기 점	중 점			
계			75.5	1,463.73	
면 온 천	면 온 리	유포 1리	9.8	45.3	준용하천
평 창 강	유포 1리	하안미리	18.6	639.3	"
평 창 강	방림 4리	대 하 리	47.1	779.13	지방하천

오염 현황

- '95. 8.22부터 '95.10.10 현재 면온천의 탁도측정' 결과 1일 평균 약 300정도의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음('95.9.30부터 휴탕을 방류되지 않음)
- '95. 9.13 06 : 00 면온천 물고기폐사사고 발견
 ⇒ 면온1리 주민 김영철 ⇒ 13 : 10경 발견신고(면온1리장 유덕현)
 - 폐사어 종류 : 송어,메기,갈겨니,통가리,미꾸라지,모래무지,버들치,돌고기

조치 사항

- '95. 9.13 면온천 수질채취 및 폐사어수거 감사의뢰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 '95. 9.19 검사결과 통보 ⇒수질·어류에서 독성물질 검출되지 않음

기타오염현황

- 사업장으로 부터 배출되는 휴탕물로 인한 탁도·부유물질 증가로 인하여 하천바닥에 토사누적으로 골뱅이등의 서식 흔적이 미약함.
 ('95. 9.29 봉평면 유포3리(개수경계지점)외 5개지점조사)

□ 생태계 파괴대책

- 면온천 유역과 평창강에는 약 30여종의 물고기와 갑각류인 골뱅이 조개 등이 서식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탁류로 인한 어종의 사멸등은 없었으며 하천바닥에 쌓인 퇴적물로 인한 생태계파괴등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나 (주)보광으로 하여금 생태계파괴 조사 용역 의뢰 코저함 ⇒ 사후 영향평가관리 측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긍정적 검토)

【 쓰레기매립장조성계획 】

「 (주)보광과 평창군 쓰레기매립장 공동추진중 」

□ 쓰레기매립장조성계획

- 위 치 : 대상지 선정중
- 수거지역 : 봉평면, 용평면 전역, (주)보광
- 규 모 : 20,000 ~ 30,000㎡ (30년이상사용)
- 매립방법 : 소각후 준호기성위생매립
- 사업내용
 - 소각시설 1기(10톤/일)
 - 위생매립시설 1식 및 기타부대시설

□ 추진상황

- 대상지선정 및 사업비 산정중
- 사업시행방법 : 분담(평창군 주관)
 - 평창군 :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해결, 인·허가처리
 - (주)보광 : 편입용지 및 위생매립시설조성

【 오수정화시설 설치계획 】

- 위 치 : 봉평면 연온리 863-3번지의 11필지
- 처리용량 : 5,000^m³/일(3차고도처리방법)
- 처리대상 인원 : 40,000인용
- 방류수처리계획
 - 유입수 200PPM ⇒ 4PPM(BOD 98% 제거)
 - ※ 법적기준 10PPM
- 오수정화시설 처리과정
 - 장기폭기 → 부상분리 → 흡착법
- 시 공 자 : 삼성중공업
- 현 공 정 : 80%
- 완공예정일 : '95. 11월말

- 95년도 하반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용 평 면

목 차

<input type="checkbox"/> 오 지 개 발	—————	사회진흥과
<input type="checkbox"/> 1읍면 1특화사업	—————	산 업 과
<input type="checkbox"/> 군도확 · 포장(무이~상진부간)	—————	건 설 과
<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취락구조개선지구 기반시설 확충	—————	도 시 과
<input type="checkbox"/> 장평 오수처리장	—————	환경보호과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수련장	—————	사회진흥과
<input type="checkbox"/> 이승복생가터 도로포장	—————	사회진흥과
<input type="checkbox"/> 간이상수도시설(백옥포)	—————	도 시 과
<input type="checkbox"/> 고냉지 지하수 개발	—————	산 업 과

오 지 개 발 사 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위 치 : 용평면 백옥포·속사리
- 사업규모 : 저온저장고 2동 (등당 100평)
- 사 업 비 : 378 백만원 (총사업비)
 - 국비 : 265 도비 : 57 군비 : 56 자담 :
- 시행기간 : '95. 3. ~ '95. 12. 31
- 현 공 정 : - %
- 사업추진현황
 - 설계용역

시행 (품의) 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예 산 액 (천원)
'95. 7. 29	'95. 9. 11	'95. 9. 11	수 의 계약	17,000	22,440

착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9. 11	'95. 10. 12	-	-	-	영월 동진건축	지방건축주사 보 이 병 식

- 공사부문 : 마을영농회 직영 (자본적 보조)

□ 문제점 및 대책

- 문 제 점
 - 기존 선정된 속사리 794-1번지 671㎡ (203평) 으로 부지 협소
- 대 책
 - 속사리 670번지 (삼양진흥 소유) 사용승락후 저온저장고 부지 사용

1읍면 1특화사업

<메주가공공장>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산업과
- 위 치 : 용평면 백옥포 1리
- 사업규모 : 메주가공공장 1동 (60평), 기계설비 1식 (8대)
- 사업비 : 85 백만원 (도비 12, 군비 28, 자담 45)
- 시행기간 : '95. 4. 24 ~ '95. 11. 30
- 현 공 정 : 20 %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예산액
'95. 4. 24	-	-	보조사업	40,000	40,000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실제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4. 24	'95. 11. 30		-	-	백옥포 작목반	산업과 이상명

그 문제점 및 대책 (기타)

- 당초 선정부지인 백옥포 172-1번지는 영동고속도로 4차선 계획에 의해 취소되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무이 - 상진부간 군도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진부면 척천리 ~ 용평면 도사리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 = 5.0Km(B = 8.0m)
- 사업비 : 1,948백만원(총사업비)
 - 국비 : 1,411 도비 : - 군비 : 537 자담 : -
- 시행기간 : '95. 6. 15 ~ 12. 31(절대공기 365일)
- 현 공 정 : 35 %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 금액	예산액
'95. 5. 4	'95. 6. 9	'95. 6. 14	공개경쟁	1,225,214	1,947,661

작 공 (예정) 일 자	준공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6. 15	12. 31	-	-	-	명일종합건설	지방토목주사보 김 찬 수

※ 설계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 절대공기 부족으로 '96년도 이월사업 마무리

취락구조개선지구기반시설확충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주택계)
- 위 치 : 용평민 속사2리
- 사업규모 : 간이오수처리장 1동(20 T/D), 하수도시설 50m, 취락구조개선 11동
- 사업비 : 200백만원(총사업비)
 - 국 비 : 200백만원
- 시행기간 : '95. 3 ~ '95. 12. 31
- 현 공 정 : 35%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풀의) 일 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예정)	계약 방 비	계약 금 액	예 산 액
'95. 3	'95. 10. 10	'95. 10. 12	경 정	138,247	200,000

작 (예 일 정) 자	준 (예 일 정) 자	설 개 번 정 내 이(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중 간 액	변 경 금 액		
'95. 10. 16	'95. 12. 31	-	-	-	신진건설(주) 심 상 호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입찰지인으로 공기 부족
- 대 책
 - 인력장비 집중 투입으로 동결기 이전 완공추진

장평오수처리시설사업

□ 사업 개요

- 시행부서 : 환경보호과
- 위 치 : 옹평면 장평리 332-1
- 사업규모 : 오수처리장 1식(250㎡/일)
- 사업비 : 297.5백만원
 - 국 비 : 도 비 : 135 군 비 : 162.5 자 담 :
- 시행기간 : '95. 6. 8 ~ 11. 30
- 현 공 정 : 60%
- 사업추진상황

시행(품의) 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예 산 액 (천원)
'95. 5. 12	'95. 5. 26	'95. 6. 3	제한경쟁	190,784	297,500

착공(예정) 일 자	준공(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6. 8	'95. 11.30	'95.9.30	39,123	229,908	장풍건설 (주)	환경서기 이상문

- ※ 설계변경사유 : 1)배수배관로 및 구조물 하단부에 양반돌출로 인한 암반 설계물량 변경
 2)하천변공사시행으로 인한 강우시 배수관로 유실방지를 위한 관 재질변경(PEM-S⇒고강도압축흡관)
 3)장평리 일대 하수관로가 기존 800mm로 설치 되어 있어 400mm 관으로는 설계 물량 처리 지남

□ 문제점 및 대책

한국청소년수련마을 건립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문화체육부
 - 위 치 : 용평면 백옥포리 산 154-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478,099㎡ (144,624평)
 - 연건축면적 : 18,564㎡ (5,616평)
 - 주요시설 : 연수동 (대강당, 소강당, 수영장, 체육관, 수련활동실등)
생활관 (침실 - 750명 수용, 오락실, 세탁장, 휴게실등)
 - 사업비 : 23,700 백만원 (총사업비)
 - 시행기간 : '94. 3. 15 ~ '96. 12. 31
 - 시 공 자 : 남경건설 (주) 서재복
 - 현 공 정 : 40 %
 - 사업추진현황
 - 토목공사 : 전체공정의 50% 진행
 - 구조물 공사 완료
 - 진입 도로공사 시행중
 - 건축공사 : 전체공정의 30% 진행
 - 기혼자 및 미혼자 숙소 골조공사 완료
 - 연수동 및 생활관(숙박동) 골조공사 시행중
- ※ '95년말 예상공정 : 약 60 % (토목 70 %, 건축 50 %)

이승복생가터 도로포장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위 치 : 용평면 노동리
- 사업규모 : 진입로 포장 L=410m B=5.0m
- 사업비 : 77 백만원 (총사업비)

- 국비 : 도비 : 77 군비 : 자담 :

- 시행기간 : '95. 10 ~ 11

- 현 공 정 : - %

- 사업추진현황

- 설계용역

시행(품의)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예산액 (천원)
'95. 8. 19	-	'95. 8. 19	수의계약	2,900	3,000

착공 (예정) 일자	준공 (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 업체	감독 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8. 19	'95. 9. 16	-	-	-	건설엔지니어링 방종국	지방토목서기 임광수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백옥포 간이상수도 신설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수도계)
- 위 치 : 용평면 백옥포 2리
- 사업규모 : 지하수개발 1식 (110m × 1공) ——— 240 T/D
- 사업비 : 23백만원 (총사업비 : 105백만원)
 - 균 비 : 13백만원 - 자 담 : 10백만원
- 시행기간 : '95. 6. 19 ~ '95. 7. 18
- 현 공 정 : 100%(완공)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예산액
'95. 5. 15	'95. 6. 10	'95. 6. 14	수 의	19,950	22,700

작 공 일 자	준 공 일 자	실 계 변 경 내 의 (천원)			도 급 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 감 액	민경금액		
'95. 6. 19	'95. 7. 18	-	-	-	(합) 덕성개발 바 순 관	토목 7급 고 준 태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전채사업의 년내 마무리 불가(송배수관로, 펌프, 배수지, 가정급수 전동)
- 대 책
 - '95년도 예산잔액으로 전기설비를 추진하고 '96년도 당초예산으로 사업마무리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산업과
- 위 치 : 용평면 속사 1리
- 사업규모 : 암반관정 1공, 이용시설 1ha
- 사업비 : 45 백만원 (국비 31.5 도비 2.25, 군비 6.75, 자담 4.5)
- 시행기간 : '95. 4. 25 ~ '95. 5. 30
- 현 공 정 : 100 %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 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예 산 액
'95. 2. 22	-	'95. 4. 25	수의계약 (마을에서 신청)	45,000	45,000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5. 10	'95. 5. 30	-	-	-	홍지지질 "노명관"	토목기사 "한두정"

□ 문제점 및 대책 (기타)

- 95년도 하반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진 부 면

목 차

- 오대산관광호텔 신축 ————— 환경보호과
- 석미아파트관련 주민여론에 대한 대책 ————— 도 시 과
- 상월오개리 임도 수해피해 대책기준및피해보상기준등 피해보상 상황 ————— 산 립 과
-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상황 ————— 도 시 과
- 평창연립주택신축(오·폐수처문제) ————— 환경보호과
- 송정택지 추진상황(문제점 중심) ————— 도 시 과

진부오대산관광호텔 신축 오·폐수처리

□ 호 텔 현 황

- 위 치 : 진부면 간평리 221-1번지
- 대 표 자 : 시대종합건설(주) 김홍남
- 건축규모
 - 건축연면적 : 24,740.7㎡
 - 시설별 규모
 - 객 실 : 13,526.7㎡(255객실)
 - 기타시설(위락시설,기계실등) : 11,214㎡

□ 오수정화시설 설치계획

- 처리용량 : 850㎡/일(3차고도처리방법)
- 처리대상 인원 : 4,000인용
- 방류수 처리계획
 - 유입수 200PPM ⇒ 6PPM(BOD97%제거)
 - ※ 법적기준 60PPM

○ 오수정화시설 처리과정

접촉산화법 → 회전원판법 → 오존처리 및 여과

- 침사조→스크린조→유량조정조→여과조→펌프핏트→접촉폭기조(1.2)
→1차 침전조→펌프핏트→모래여과→활성탄여과→소독방류조→방류.

- 시 공 자 : 춘천시 효자동 709번지 (주)대양
- 현 공 정 : 10 %
- 완공예정일 : '96. 2월말

석미아파트관련주민여론에대한대책

□ 개요

- 위 치 : 진부면 송정리 송정택지 1블럭
- 규 모 : 아파트 2동 220세대 (13층130세대, 15층 90세대)
- 사 업 비 : 7,669백만원
- 시행기간 : '94. 4. 29 ~ '95. 9. 30
- 현 공 정 : 100%(완공)
- 시 공 자 : 새경개발 심 광 일

□ 주민여론

- 상가 일부건물 내부 무단수선 및 용도변경
- 단지 경계내 옹벽 일부 미설치

□ 대책 및 처리결과

- 건물내부 무단수선, 용도변경 및 옹벽 미설치
 - 허가된 도면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이 이루어진 건축물임을 주민에게 '95. 10. 7 설명(처리완료)

임도수해피해대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산림과, 건설과
- 위 치 : 전부면 상월오거리 구간
- 피해일시 : '95. 8. 23 - 8. 26(4일간)
- 피해상황

임도유실및산사태				농경지피해				비고
임도유실		산사태		유실		매물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2	0.67km	4	3.2877ha	8	1.36ha	86	12.27ha	

○ 피해보상 대책

- 농작물피해에 대하여는 풍수해 대책 및 등법시행령등의 규정상 재해보상금의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농작물피해보상 처리 지난
- 농지의 원상복구 및 피해자의 보상은 풍수해대책법에 의하여 산업과에서 업무관장 하고 있음.

진부상수도시설확장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수도계)
- 위 치 : 진부면 일원
- 사업규모 : 상수도 시설확장 Q = 9,500T/D(1차 Q = 4,800T/D)
- 사 입 비 : 2,500백만원(총사업비 : 7,230백만원)
 - 국 비 : 2,500백만원
- 시행기간 : '95. 4 ~ '97. 12. 31
- 원 공 정 : 28%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외)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예산액
'95. 5. 8	'95. 6. 16	'95. 6. 21	경 정	1,641,613	2,500,000

작공일자	준공(예정)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6. 26	'95. 13. 31				명일종합건설 이속자	토목 7급 고준태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절대공기부족(240일)으로 '96년도 이월이 불가피하며 전체사업비 미확보로 당초계획 시설 및 계속연결공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대책
 - '96년도로 사고이월하여 계속추진하고 '96 당초예산확보 사업비로 당장의 급수난 우선 해결

평창연립신축공사 오·폐수처리처리

건축 현황

- 위치 : 진부면 간평리 246-5번지외 1필지
- 대표자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동본리 61번지 유성준
- 건축규모
 - 건축면적 : 759.36㎡(A동 454.4㎡, B동 304.96㎡)
 - 세대 수 : 16세대(동별 8세대)

정화조 설치계획

- 정화조용량 : 11㎡/일(A동 5.5㎡/일, B동 5.5㎡/일) - 동별 정화조설치
- 처리방법 : 철근콘크리트각형 3단 부패조
- 처리대상 인원 : 80인용(동별 40인용)
- 시 공 자 : (합)대광정화조
- 현 공 정 : 80%
- 완공예정일 : '95. 11월중

송 정 택 지 추 진 상 황

□ 개 요

- 위 치 : 진부면 송정리
- 규 모 : 택지조성 98,773㎡ (29,878평)
- 사 입 비 : 5,422백만원 (군비 3,122백만원, 지역개발기금 2,300백만원)
- 시행기간 : '91. ~ '94. 12(택지조성)
- 분 양 율 : 70.5% (234필지중 134필지 52,363㎡)

□ 문 제 점

- 일부 종전토지 등기 미이전으로 분양토지 등기 지인
 - 미이전 1필지 2,364㎡ (라석준외 8명 소유)
-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저조 ('95분양 18필지 427,604천원)
- 도로협소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약 110필지)

□ 추진상황 및 대책

- 소유권 보전등기 후 분양토지 개별등기 추진
 - 예상시기 : '95. 10. 25 ~ '95. 11. 15
- 진부우회도로개설등 지역개발에 따른 택지수요 발생 예상
 -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진부 ~ 동해간 산입도로개설
- 미분양택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조치
 - 6필지 1,242㎡ (총 10필지 2,250㎡)

- 95년도 하반기 -

군정주요사업장추진상황

도 암 면

목 차

<input type="checkbox"/> 황계1리 진입로 포장	—————	사회진흥과
<input type="checkbox"/> 도암면 청사신축	—————	재 무 과
<input type="checkbox"/> 유천1리 판두교 가설	—————	건 설 과
<input type="checkbox"/> 차항2리농어촌도로확·포장	—————	건 설 과
<input type="checkbox"/> 황계수해주택이주기반조성사업	—————	도 시 과
<input type="checkbox"/> 병내리 유리온실운영실태	—————	산 업 과
<input type="checkbox"/> 수하리 군도정비 관리실태	—————	건 설 과
<input type="checkbox"/> 황계상수도 집수장관리실적	—————	도 시 과
<input type="checkbox"/> 황계5리 국제트랜스 산림훼손 복구 추진상황	—————	산 립 과

횡계1리 진입로 확 · 포장공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사회진흥과
- 위 치 : 도암면 횡계1리
- 사업규모 : 농로포장 L=330m (B=3.0m)
- 사업비 : 20 백만원 (총사업비)
 - 국비 : 도비 : 군비 : 20 자담 :
- 시행기간 : '95. 3. 16 ~ '95. 4. 28
- 현 공 정 : 100 %
- 사업추진현황

시행(품의)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예산액(천원)
'95. 3. 6	-	'95. 3. 16	수의계약	10,322	20,000

착(예정)일 자	준(예정)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득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3. 20	'95. 4. 28	-	-	-	창하건설 김연하	지방토목주사 이경균

※ 설계변경사유 :

□ 문제점 및 대책

도암면청사신축사업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재 무 과
- 위 치 : 도암면 횡계리 335번지의 3필지
- 사업규모 : 2,028.185㎡(지상2층 지하1층)
- 사 업 비 : 1,884 백만원(총사업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1,884 자 담 :
- 시행기간 : 1994. 1. 1 ~ 1996.12월 말경
- 현 공 정 : 27 %
- 사업추진 상황

시행(품의)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예 산 액
'95. 4. 3	'95. 6.13	'95. 6.21	제한경쟁	1,884,000	

착 공 (예 정) 일 자	준 공 (예 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 (천원)			도급 업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6.26	'96.12.31				(주)한광	토목 : 김남국 건축 : 이병식 전기 : 박상호 통신 : 최현일

- ※ 설계변경 계획 - 지하 소방차고틀 PIT부분과 혼합 창고로 시공
- 지하실 방수벽 현 20cm - 40cm로 조정검토
 - 유리 복층 칼라유리 - 복층 투명유리로 변경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민원실이 A,B로 구분 설계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초래 및 직원통제 어려움
 직원통제 어려움
- 대 책 : 청사 완공후 배치시 적의조정 계획

판두교 가설공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도암면 유천리
- 사업규모 : 교량가설 L = 20m(B = 7.0m)
- 사업비 : 200백만원(총사업비)
 - 국비 : - 도비 : - 군비 : 200 자담 : -
- 시행기간 : '95. 6. 9 ~ 12. 5
- 현 공 정 : 60 %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 금액	예산액
'95. 4. 10	'95. 5. 30	'95. 6. 3	공개경쟁	135,990	200,000

과 공 (예정) 일자	준공예정 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독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6. 9	12. 31	-	-	-	(주)유양건설	지방토목주사보 정 기 화

※ 설계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 없 음 -

차항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위 치 : 도암면 차항리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 = 1.7Km(B = 6.5m)
- 사 업 비 : 485백만원(총사업비)
 - 국비 : 417 도비 : - 군비 : 68 자담 : -
- 시행기간 : '95. 5. 29 ~ 12. 31
- 현 공 정 : 55 %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 약 일 자	계약방법	계 약 금 액	예 산 액
'95. 4. 7	'95. 5. 16	'95. 5. 22	공개경쟁	255,724	485,392

작 공 (예정) 일 자	준공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업 체	감 득 공 무 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5. 29	12. 31	-	-	-	(주)강호건설	지방토목서기 정 기 화

※ 설계변경사유

□ 문제점 및 대책

- 없 음 -

횡계수해주택이주기반조성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주택계)
- 위 치 : 도암면 횡계리 661 - 14번지
- 사업규모 : 기반조성 3,657㎡ (1,106평).
- 사 입 비 : 200백만원(총사업비)
 - 국 비 : 100백만원 - 군 비 : 100백만원
- 시행기간 : '93. 10 ~ '94. 12. 8
- 힌 공 정 : 100%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예산액
'93. 10. 29	'94. 7. 22	'94. 9. 5	경 경	157,280	200,000

착공일자	준공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 급 채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 감 액		
'94. 9. 10	'94. 12. 8	'94. 11	증37,753	157,280	(주)국태건설 토목 7급 바 준 휘 고 준 태

※ 설계변경 사유 : 하수관로 관경부족으로 하수처리 불가로 인한 보관공사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주택건설시 4층이하 주택건설만 가능하므로 토지이용율 저하 및 수해주민 감소

○ 대 책

- 횡계도시계획재정비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이 건물(15층)신축으로 수익성증대(군) 및 수해주민 확대('96 상반기 도시계획 확정)

고냉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산업과
- 위 치 : 도암면 병내리리
- 사업규모 : 유리온실 6,850평, 비닐온실 4,444평, 저온저장고 100평
수송차량 3대, 절화결속기 10대, 조직배양실 22평,
작업장 450평, 부속사 35평
- 사 업 비 : 3,862 백만원 (국비 965.5 도비 386.2, 군비 579.3,
 자담 772.4, 용자 1,158.6)
- 시행기간 : '94. 4. 15 ~ '95. 9.
- 현 공 정 : 100 %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 일 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예 산 액
'94. 3. 16	-	'94. 4. 14	수의계약 (단지에서 신청)	3,862,000	3,862,000

착 공 (예정) 일 자	준 공 (예정) 일 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급업체	감 독 공무원
		일 자	증감액	변경금액		
'94. 4. 15	'95. 9.	-	-	-	주식회사 '지성' '정영덕'	농어촌 진흥공사

※ 작목입식 : 장미, 백합

□ 문제점 및 대책 (기타)

수하군도 정비관리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건설과
- 노 선 명 : 도암면 황계 ~ 수하 (군도 15호)
- 사업규모 : 교량가설 L = 13.2Km

□ '95 정비실적

- 응벽보수
 - 위 치 : 도암면 수하리(용평리조트 옆)
 - 사 업 량 : 응벽설치 L = 14m L형측구 L = 17m
 - 사 업 비 : 7,160천원(군비)
 - 사업기간 : '95. 7. 1 ~ '95. 8. 31
- 낙석 방지시설 보수
 - 위 치 : 도암면 수하리(낙석방지책 설치구간)
 - 사 업 량
 - 낙석방지책 교체 : 21경간
 - 망 보 수 : 47경간
 - 가드레일 설치 : 300m
 - 사 업 비 : 19,000천원
 - 사업기간 : '95. 6. 23 ~ '95. 8. 9

□ 기타사항

- 수로원 1명 고정배치 도로관리
- 매년 도로낙석정비 및 차선도색 실시

도암상수도 배수지확장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도시과(수도계)
- 위 치 : 도암면 황계리(상수도 배수지)
- 사업규모 : 배수지확장 1지(1,000T/D)
- 사 입 비 : 100백만원(총사업비)
 - 군 비 : 100백만원
- 시행기간 : '95. 4. 10 ~ '95. 6. 8
- 현 공 정 : 100%(완공)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천원

시행(품의)일자	입찰 일자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예산액
'95. 2. 28	'95. 3. 30	'95. 4. 4	경 정	69,499	100,000

작공일자	준공일자	설계변경내역(천원)			도입체	감독공무원
		일자	증감액	변경금액		
'95. 4. 10	'95. 6. 8	-	-	-	(주)영진 김원태	토목 7급 고준태

- 사업추진 효과
 - 수돗물 사용이 적은 시간(야간)에 배수지 저장으로 급수난 우선 해소

국제트랜스 산림훼손 복구 사업

□ 사업개요

- 시행부서 : 산림과
- 위 치 : 도암면 횡계리 산453외1필
- 사업규모 : 27,826㎡
- 사 업 비 : 270백만원
- 시행기간 : '95. 10. 15 - 11. 30.
- 현 공 경 : 0 %
- 사업추진상황
 -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한 복구 설계서대로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여 공증을 거친후 원안자 자력복구토록 조치('95. 10. 15. 착공 '95. 11. 30한 복구 완료예정)

□ 문제점 및 대책

- 산림훼손 수허가자 국제트랜스 대표 고질석으로 부터 동일건설 (주) 대표 소만석이 위임 받아 산림훼손 적지복구를 '93. 4. 15 - '93. 6. 30까지 복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준공검사 미필되어 '93. 7. 23자로 보완 통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준공검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93. 8. 14자로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하여 소송수행중 '94. 8. 2자로 패소됨으로 이를 복구하고자 보증보험 예치금을 청구하였으나 대한보증보험(주) 종로보상사무소장으로부터 동일건설(주)대표 소만석이 보험 회사에 (원인자복구를 구실로)보험금 지불 중지 요청이 있다고 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미지급.